

제417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26일(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9) 철회동의의 건
3.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8) 철회동의의 건
4.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5.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7)
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0)
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
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
1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
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
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
13.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2)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3)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19.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1)
2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3)
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4)
2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8)
23.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0)
2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1)
25.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7)
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2)
2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48)
29.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892)
3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912)
3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7)
3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7)
3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2)
34.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9)
3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7)
3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2)
3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4)
3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8)
3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3)
4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4)
4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1)
4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2)
4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2)
44.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1)
4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0)
4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
- 47.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0)
 - 4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3)
 - 4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4)
 - 5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5)
 - 5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1)
 - 5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 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3)
 - 5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4)
 - 5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2)
 - 56.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1)
 - 5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 5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6)
 -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 6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9)
 - 6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7)
 - 6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3)
 - 6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3)
 - 6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5)
 - 6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8)
 - 7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6)
 - 71.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 7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782)
 - 73. 농어업희의소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4)

-
74.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5)
 75.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0)
 7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9)
 7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
 7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
 7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
 8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1)
 8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
 8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
 8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
 8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
 8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
 8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
 8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7)
 8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7)
 89.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90.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91.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92.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9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7)
 9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0)
 9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7)
 9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9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9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2)
 99.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1)
 100.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4)
 10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7)
 10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9)
 10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3)

-
- 104.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4)
 - 10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9)
 - 10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
 - 1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
 - 1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
 - 10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
 - 1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
 - 1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
 - 11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
 - 11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5)
 - 1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9)
 - 11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9)
 - 11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4)
 - 11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4)
 - 11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7)
 - 119.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7)
 - 12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2)
 - 1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4)
 - 1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5)
 - 1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4)
 - 1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1)
 - 12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7)
 - 12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6)
 - 1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8)
 - 12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2)
 - 1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5)
 - 13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4)
 - 13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6)

-
- 13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8)
 - 13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3)
 - 13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0)
 - 13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4)
 - 13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6)
 - 13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8)
 - 13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9)
 - 139.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6)
 - 14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0)
 - 14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
 - 142. 농어업 재해대책기금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3)
 - 14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5)
 - 14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2)
 - 14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9)
 - 146.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93)
 - 14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4)
 - 148.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8)
 - 149.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1)
 - 1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9)
 - 151.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0)
 - 15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
 - 15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 15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 15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0)
 - 15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2)
 - 15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0)
 - 15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3)
 - 15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8)

16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4)
16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51)
16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3)
16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4)
164.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7)
16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7)
16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3)
167.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
168.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10)
169.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20)
170.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8)
171. 해경72정 선체인양 후 유해수습과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순직자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지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1)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4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9) 철회동의의 건 14
3.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8) 철회동의의 건 14
4.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15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5.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15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7) 15
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0)	15
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	15
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	15
1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	15
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	15
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	15
13.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15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2)	15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3)	15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15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15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15
19.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1)	15
2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3)	15
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4)	16
2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8)	16
23.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0)	16
2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1)	16
25.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16
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7)	16
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2)	16
2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48)	16
29.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892)	16
3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912)	16
3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7)	16
3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7)	16
3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2)	16
34.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9)	16
3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7)	16

3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2)	16
3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4)	16
3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8)	16
3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3)	16
4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4)	16
4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1)	16
4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2)	16
4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2)	16
44.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1)	16
4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0)	16
4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16
47.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0)	16
4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3)	16
4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4)	17
5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5)	17
5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1)	17
5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17
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3)	17
5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4)	17
5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2)	17
56.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1)	17
5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17
5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6)	17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17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17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17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17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17
6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9)	17
6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7)	17
6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3)	17
6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3)	17
6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5)	17
6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8)	17
7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6) ..	17
71.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	17
7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782)	17
73. 농어업회의소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4)	17
74.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5)	17
75.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0) ..	17
7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9)	17
7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	17
7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	18
7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	18
8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1)	18
8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	18
8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	18
8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	18
8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	18
8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	18
8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	18
8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7)	18
8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7)	18
89.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	18
90.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	18
91.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18
92.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18
9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7)	18
9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0)	18
9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7)	18
9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18

9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18
9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2)	18
99.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1)	18
100.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4)	18
10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7) ...	18
10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9)	18
10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3)	18
104.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4) ...	18
10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9) ...	18
10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	18
1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	18
1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	19
10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	19
1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	19
1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	19
11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	19
11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5)	19
1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9)	19
11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9)	19
11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4)	19
11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4)	19
11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7)	19
119.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7)	19
12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2)	19
1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4)	19
1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5)	19
1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4)	19
1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1)	19
12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7)	19
12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6)	19
1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8)	19
12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2)	19
1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5)	19
13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4)	19
13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6)	19
13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8)	19
13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3)	19
13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0)	19
13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4)	20
13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6)	20
13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8)	20
13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9)	20
139. 선박교통관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6)	20
14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0)	20
14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	20
142.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3)	20
14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5)	20
14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2)	20
14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9)	20
146.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93)	20
14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4)	20
148.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8)	20
14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1)	20
1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9)	20
151.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0)	20

15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 ...	20
15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20
15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20
15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0)	20
15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2)	20
15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0)	20
15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3)	20
15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8)	20
16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4)	20
16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51)	20
16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3)	21
16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4)	21
164.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7)	21
16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7)	21
16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3)	21
167.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	21
168.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10)	21
169.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20)	21
170.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8)	21
171. 해경72정 선체인양 후 유해수습과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순직자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지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1)	21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어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 전에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된 위원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임재금 전문위원입니다.

김준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심을 다해 보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소위원회 구성을 변경한 후 2023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결산과 계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4개 소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 소위원장은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의 소위원회 배정을 새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각각 조경태 위원님과 이양수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소위원회 구성 세부 내용은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9) 철회동의의 건

3.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8) 철회동의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과 23일 국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장과 문금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의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우리 위원회의 철회동의 여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 철회동의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철회동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과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예정된 결산과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해당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청취한 후에 결산과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안건 심사를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전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5.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7)

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0)

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

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

1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

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

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

13.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2)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3)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19.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1)

2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3)

-
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4)
 2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8)
 23.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0)
 2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1)
 25.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7)
 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2)
 2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8)
 29.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2)
 3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2)
 3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7)
 3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7)
 3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2)
 34.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9)
 3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7)
 3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2)
 3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4)
 3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8)
 3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3)
 4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4)
 4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1)
 4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2)
 4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2)
 44.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1)
 4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0)
 4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47.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0)
 4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3)

-
4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4)
5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5)
5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1)
5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3)
5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4)
5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2)
56.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1)
5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5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6)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6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9)
6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7)
6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3)
6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3)
6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5)
6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8)
7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6)
71.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7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2)
73. 농어업회의소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4)
74.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5)
75.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0)
7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9)
7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

-
- 7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
 - 7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
 - 8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1)
 - 8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
 - 8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
 - 8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
 - 8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
 - 8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
 - 8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
 - 8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7)
 - 8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7)
 - 89.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 90.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 91.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 92.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 9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7)
 - 9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0)
 - 9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7)
 - 9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 9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 9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2)
 - 99.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1)
 - 100.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4)
 - 10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7)
 - 10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9)
 - 10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3)
 - 104.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4)
 - 10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9)
 - 10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
 - 1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1)

1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
10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
1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
1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
11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
11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5)
1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9)
11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9)
11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4)
11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204)
11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07)
119.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7)
12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2)
1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4)
1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5)
1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4)
1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1)
12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7)
12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6)
1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8)
12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2)
1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5)
13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4)
13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6)
13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8)
13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3)
13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0)

13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4)
13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6)
13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8)
13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9)
139.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6)
14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0)
14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
142.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3)
14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5)
14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2)
14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9)
146.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93)
14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4)
148.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8)
14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1)
1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9)
151.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0)
15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
15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15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15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0)
15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2)
15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0)
15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3)
15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8)
16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4)
16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1)

-
- 16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3)
 - 16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4)
 - 164. 경제 협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7)
 - 16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7)
 - 16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3)
 - 167.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
 - 168.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10)
 - 169.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20)
 - 170.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8)
 - 171. 해경72정 선체인양 후 유해수습과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순직자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지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1)

(10시10분)

○**위원장 어기구**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171항 해경72정 선체인양 후 유해수습과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순직자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과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윤준병 위원** 자료 요구와 관련된 건데요.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은 적법하게 요구된 자료이니만큼 적기에 제대로 내실 있게 제출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은 부처의 직무유기고 법 위반입니다.

이번 결산심사 앞두고 요청한 자료들 제출되는 내용 보면 어제저녁에야 제출된 경우도 있고 정작 제출된 내용을 보면 요구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자료, 껌데기로만 제출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국회 상임위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련해서 지금 양곡관리법 제16조제3항에 의거해서 처리한다고 농식품부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격리곡 등을 매입하도록 농협 등에 송부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공문 사본 또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각 공문별 첨부된 매입·검사계획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6월 15만t 규모의 쌀값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농협에 지시·하달한 공문 사본 일체, 지난 8월 13일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10만t 소비촉진대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서 또 농협 내부의 자체 방침서 사본 일체, 8월 13일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10만t 소비촉진대책과 관련해서 각 지역조합에 하달한 공문 사본, 이것을 지금 현재 보고하고 그러는데 본격적인 질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제출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어기구 예, 자료제출 건은 상임위 회의 할 때마다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충실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는 자료제출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윤준병 위원 요구대로 본격적인 회의 진행하기 전까지 가능한 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농식품부에 할당관세 수입업체들 명단을 좀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요. 농식품부에서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기 때문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라는 답변으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할당관세 품목이 대폭 늘었습니다. 22년도까지 한 20여 개 품목, 그것도 사료 제조와 관련된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던 할당관세가 한 70여 품목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세수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할당관세가 적용이 되면 실제로 관세가 0이 되고 이로 인해서 얻는 수입업체들의 수익은 1조 원가량이 훌쩍 넘습니다. 그만큼 또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업체들이 천문학적인 관세 혜택을 본 것에 비해서 물가안정에 그러면 제대로 기여했느냐를 우리 상임위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할당관세 업체들에 대한 목록은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고 있지 못합니다. 국회증감법에 따르면 기밀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외교·안보와 관련된 자료 이외에는 모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당관세 추천업체 명단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 농해수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할당관세 추천업체 목록 이것은 국가 기밀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출을 해 주셔야 할당관세 문제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단점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천업체 정도는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

양당 간사님께서 상의 좀 해 주시지요.

○정희용 위원 정부 입장을 들어 보고 왜, 못 하면 왜 못 하는지 이유를 한번 들어 보시고……

○이원택 위원 저도 좀 약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관님,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수입업체 관련한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 수입업체와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점검할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물가라든가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야 할 시기가 됐는데 제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 아마 이것 자료요청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제가, 제 기억에는 의결을…… 21대 국정감사 때도 자료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그때도 관세청 평계를 대고 주지 않는데 그때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농식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왜 그 자료를 주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고 장관님께서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조금 규명을 해야 할 영역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정책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따져 봤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어서 임미애 위원처럼 저는 이제 할당관세에 해당되는 품목 업체를 구체화하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요청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에서 좀, 위원장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희용 간사님 말씀대로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다음에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간사님 말씀 포함해서 임미애 위원님 지적하신 것, 여기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난번에 간사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위원님 실에는 별도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름을 다 공개하고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aT를 통해서 파악해서 이름이 가려진 채로 전체 수입량 이렇게 해서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희용 간사님.

○정희용 위원 이게 의결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자, 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타 법에 의하거나 타 상임위하고 관련 있어서 이게 전체를 오픈할 수가 없는 사안인데 우리가 그러저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의결해 버리면 잘못하면 저희 상임위만 모양이 굉장히 좀 이상할 수 있어서 정부 측에서 좀 충실하게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해하지 않으시도록 설명을 잘 드리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고 그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면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서로 방법을 정부 측하고 같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제가 지금 방금 우리 보좌관한테 확인을 해 보니 그러니까 업체명, 대표자, 품목, 수입량, 수입금액 뭐 아마 이런 정도의 자료를 요청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업체명은 빠져 있고 A 업체, B 업체라고 써 있고 수입금액 이 정도 자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를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입금액 이 정도 자료를 주는 것은 우리가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아마 수입영향분석은 기재부가 해 가지고 기재위에 보고한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관련 보고를 여기서 받지를 않잖아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가 21대 때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업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께서도 법안 발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부에서도 수입업체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제 적극적으로. 저는 그것을 정부 업무 범위에 확실히 넣고 수입업체를 관리해서 물가 잡을 때는 물가 잡을 대로 쓰고 또 농업을 지킬 때는 농업을 지키는 때에 쓰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기가 사각지대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정부 측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도……

○임미애 위원 (손을 두드림)

○위원장 어기구 임미애 위원님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업체명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해서 들어와서 이 물건이 그러면, 그 시점에 농산물 가격이 너무나 올라서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수입을 통해서 밥상물가를 관리하겠다는 정책수단으로 지금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업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푸느냐도 우리는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는 것은 저희가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 그다음에 특히 이 수입을 통해서 지금 국내 생산 기반이 급속하게 와해되고 있다라는 농민들의 불만을 오랫동안 들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업체명이 반드시 들어가고 물량이 반드시 표기되고 그다음에 수입된 시점도 반드시 기록된 자료가 공개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지금 임미애 위원님 주장하시는 저런 것을 이렇게 공개가 어려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본인이 동의를 해야만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그동안,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제출된 적이 없었고 저희들이 저번에 이원택 간사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aT를 통해서 수입업체명이 다 가려진 채로 수입량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물량 배정을 2주일 안에 반드시, 말하자면 팔 수 있는 물량, 팔아야만 한다라는 전제하에 물량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마지막으로 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어기구 가만히 있어, 잠깐만요.

○이만희 위원 저도 발언 기회 좀 주시지요.

○이원택 위원 우리 이만희 위원님 아까부터……

○위원장 어기구 지금 위원님들 발언이 다 지금 자료 공개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이만희 위원 뭐라고요?

○위원장 어기구 자료 공개 때문에 지금 발언하시는 것이지요, 의사진행발언을?

○이만희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이 정도 하시지요, 하시고……

○이원택 위원 아니, 제가 하나만……

이만희 위원님 손 드셨어요.

○이양수 위원 아니, 여기 저기 저…… 아까부터 손 들었어요, 이만희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그래,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택 위원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양수 위원 아니, 민주당만 얘기하고 왜 우리 당 얘기 안 시켜요?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이만희 위원 아니, 소리 지를 일은 아니고……

○위원장 어기구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희 위원 할당관세제도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할당관세제도가 어떤 특정 기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책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어떤 물가 안정이라든지 우리 시장에서, 우리 생산자, 우리 농업 분야의 생산자에 대한 보호 분야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집행하는 정책적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정성이나 또 집행의 효율성 이런 부분이 또 고려돼서 지금 이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무조건 이 내용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라 이런 내용보다는 정부에서 적어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의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하라고 요청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좋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 마지막으로……

○주철현 위원 (손을 두드림)

○위원장 어기구 자, 마지막?

주철현 위원님 말씀하시고 간사님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저도 할당관세제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개인정보 때문에 못 내놓겠다고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할당관세에 관련된 수입이 급증을 했고 또 뒷말이 많아요.

도대체 어떤 업체가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제출받아서 확인해야 할 의무가 국민의 대표인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안 되면 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제출 요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못 내놓겠다 하시게 되면 정식으로 결의 절차를 밟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간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정리해 주세요.

○이원택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관님, 제가 21대 때 국정감사 때 요청했을 때는 명단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농식품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 증감법 위반입니다. 사실 농식품부가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한 위반이라는 말씀을 제가 그때도 드렸었고.

그런데 두 번째는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국내업체들은 다 오픈돼 있는데, 국내업체들 양파생산업체들 유통업체들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 개인정보 등의 여부와 무관하게 다 오픈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양파생산자, 유통업체들

다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양파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마늘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왜 그것을 개인정보 동의로,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안 해 줍니까? 그러면 지금 국내의 유통업체들이나 양파생산업체들 다 예를 든다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오픈한 겁니까?

이것은 차별이에요. 이것은 시장 경쟁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데에 또 차별입니다, 이것은. 시장경제에서 핵심은 공정한 경쟁 아닙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려면 똑같이 보호해 줘야지 국내업체들은 오픈하고 국외업체들은 오픈 안 하고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

우리 정부가, 특히 우리 농식품부가 국내의 농업 관련 업체들은 그냥 오픈해 버리고 수입 관련 업체들은 지켜 준다? 개인정보를 빌미로? 저는 정부가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간사들끼리 좀 논의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제출 요구 건은 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상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간사들끼리 상의를 해 주시고 또 정부 측에서는 가능한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열람 방법도 있으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위원님들께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결산과 법률 관련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법률 관련해서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요청하신 김선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의원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 여주시양평군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이 융복합된 분야로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 로보틱스,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환경문제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푸드테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농업의 황금알로 불리는 푸드테크는 청년 일자리 창출, 농식품 수출 확대 등 우리 경제의 발전과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있어 농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정부도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인력 양성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우려 하고 있으나 푸드테크 관련 법제도적 기반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푸드테크 발전을 견인하고 있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푸드테크 관련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시키고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김선교 의원님 좋은 법안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소관 부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03항 등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 건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 강화,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집행해 왔습니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AI 솔루션 등 첨단 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 수출 지원을 통해 121억 3000만 불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산업화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해외 공급망 확충, 생산성 향상 등에 중점 투자하였고 재해 피해, 농가 경영 위기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고 동물복지 확산을 위한 전환점 마련과 함께 동물보호 기반시설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농촌구조 재편, 식량 안보 강화, 스마트농업 고도화 등 미래를 위한 과제에 투자하고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지난해 집행한 2023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큰회계 등 6개 회계와 농지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계와 기금을 합한 세입·수입 계획 총액은 27조 6982억 원이었으나 총 수납액은 27조 8107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및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계 및 기금의 당초 세출·지출 편성액 32조 4126억 원에 2022회계연도 이월액 9328억 원 등을 포함해 예산현액은 33조 5344억 원이었으며 이 중 31조 957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의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은 대부분 계획대로 집행하였으나 공사비 지급 시기 미도래, 농어촌특별세 수납구조에 따른 농특·지특회계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이월이 발생하였고 불용은 회계·기금 간 전출금 등 내부거래와 사업 수요가 감소한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비, 재보험금, 피해보전직불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 945억 원을 편성받아 신종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피해지원과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지출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세출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으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온라인 거래 확대 등 급변하는 축산물 유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필요성이 낮아진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합하는 등 총 23개의 법률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유지하고 동 위원회에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여 농업계와 범부처가 함께 농업·농촌의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고 또는 승인 사항을 통보 사항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정 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 총 10개의 법률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이며,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은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각종 자격이나 사업자 등록 요건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등 총 10개 법률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상공인 등이 경기 둔화에 따른 인력난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셔서 농림축산식품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소관부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2항 등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회계연도에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활력 넘치는 어촌 구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해운·항만의 경쟁력 제고와 해양영토 관리 강화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역동적인 해양수산업을 육성하는 데 재정투자를 집중해 왔습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를 도입하였으며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어업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김, 양식연어 등 전략품종의 고부가가치화와 양식·가공·유통시설에 대한 규모화·스마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어업지도선을 지속 확충하고 무인도서 해양환경을 개선하는 등 우리 해양영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도 지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부문은 1조 826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773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7조 5661억 원 중 7조 79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428억 원을 이월하고 2443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95억 원을 배정받아 1039억 원을 집행하고 24억 원은 이월, 32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발전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수산발전기금은 총 8599억 원을 조성하여 융자사업과 경상사업에 5836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763억 원은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3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을 당초 국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월과 불용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이에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재정 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양수산 정책 수립과 예산의 편성·집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안건이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제출한 2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비롯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획확인서와 어획증명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근해 불법어업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위한 신고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통해 면세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신고 없이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에 대해 부과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타 법에 따른 입출항 신고 대상 어선을 동법에 따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형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협회의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던 것을 완화하여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상 4건의 일괄개정법률안은 각각 형별규정을 합

리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집행유예에 관한 결격사유를 명확화하여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어업인 교육훈련 등 지원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취업난 등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해역 통항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범위를 대형 화물선이 운항하는 영해 밖 일부 수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재한 농촌진흥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진흥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식량작물의 신품종 육성과 안정생산 기술로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고 일손을 줄이기 위해 밭농업 기계화와 현장 중심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확산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작목 육성과 치유농업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했고 K-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과 농식품 수출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올해도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농업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육종 등 첨단과학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으로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60억 원이었으며 그중 10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2547억 원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58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조 2605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1조 2331억 원을 집행하였고 55억 원은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19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은 계약 체결 및 설계 지연 등으로 발생

하였고 불용은 비목별 집행잔액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예산을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농촌진흥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섭 산림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경제임업을 육성하는 한편 산림복지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 보전을 강화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산림재난에 대응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산업을 활성화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산림휴양, 치유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글로벌 산림강국 실현을 위해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산림 부문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조 1701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197 억 원이 많은 1조 189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순계 기준으로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당초 예산액은 2조 4837억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876억 원과 예비비 629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조 6342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2조 5366억 원을 지출하였고 678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98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은 일부 사업의 공기 부족 및 계약 체결 지연 등으로 대부분 발생하였고 불용은 비목별 집행잔액 등입니다. 예비비는 2023년 봄철 대형 산불에 따른 피해복구 긴급 벌채비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저지를 위한 긴급방제비 및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국외 임차헬기 운영을 위해 833억 원을 배정받아 798억 원을 집행하였고 34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 소관 2023년도 예산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었습니다마는 불

가파하게 일부 항목에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산림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산림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상권 해양경찰청 차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상 국외출장 사유로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양해를 얻어 불출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존경하는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국민의 안전과 해양경찰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해양경찰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해양경찰은 국민안전 확보와 국가 해양안보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이 바다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하고 레저 등 다양한 해양활동을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회계연도에 해양주권 수호와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구조형 중형헬기 2대와 3000t급 경비함정 1척을 포함하여 총 8척의 함정을 신규로 계약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22년 서해권에 이어 지난해 제주권 광역 VTS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선박 전복 등 고위험 사고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수중 수색구조에 적합한 첨단 장비를 보강하는 등 사고 대응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에는 약 2만 1000여 명의 해상조난자를 구조하였으며 1072건의 마약범죄 등을 포함한 총 5만 1000여 건의 해양범죄를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재정 운영을 통해 해양에서의 인명사고를 줄이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양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정수결정액 79억 원 중 54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3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조 8298억 원이며 이 중 1조 8055억 원을 집행하였고 196억 원은 이월, 4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해양경찰청은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 지연과 납기 연장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부족한 공공요금 및 인건비 충당을 위해 331억 원을 이·전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전용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부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언은 예산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포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요약보고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림부 소관 결산 중 첫 번째 국제농업협력 사업입니다.

WFP 식량원조 사업은 매년 쌀 5만t을 원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곡대보다는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소요가 늘어나고 있는바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진청 소관 결산입니다.

하단의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착공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말에 10억 원의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9페이지 상단입니다.

또한 착공이 확정된 후 선금을 지급했어도 무방한 전기·통신 공사에 1억여 원의 선금을 집행하였는데 현재까지도 건축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뒤의 도표에서 보듯이 농림부 소관 사업의 경우 9개 사항, 농진청 소관 사업의 경우 2개 사항이 연례적으로 시정되지 않고 있는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법안에 대해서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농가소득안정 심의위원회를 두려는 것인데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중복 설치 제한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푸드테크산업법은 식품산업진흥법이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 등 기존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4번,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은 타 조합에서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비용 지원의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법은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축산법 등 기존 관계 법률 개정도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해수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어선원직불금은 실제 직불금을 지급받은 인원이 계획 대비 49%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 중 49%를 실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어선원들이 직불금 지급조건인 연간 6개월 이상 승선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지급조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2페이지 하단, 연안항만 방재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재연구 등을 위하여 수리모형 실험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예산액 중 99%를 타 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2차원 수로 실험동을 포함하여 연구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이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 등 3차원 수조 실험동을 추가 건립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가 행정재산에 건물을 건립하고 부지 무상사용 혜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채납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현재 건립부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보완하고 부지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요약 검토보고서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담기관 지정 및 품질 인증을 통해 수산기자재 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수산기자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수산기자재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범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어선 등 일부 기자재를 제외할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 정부가 제출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2028년으로 예정된 TAC 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약 1500개가 넘는 어업규제를 총생산량 관리로 장기적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정안에 따르면 약 2200척의 어선이 새로운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어업인과 유통·판매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현장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어업인들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쇄선영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재금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임재금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산림청과 해경 결산 검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청입니다.

4쪽 상단입니다.

산림청은 22년도에 산림과학원 석박사 연구원의 보수를 상향 조정하고도 23년도 예산안에 미반영하였다가 보수 부족액을 타 사업의 예산에서 이·전용 절차도 없이 집행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해경 소관입니다.

8쪽 하단입니다.

외사경찰활동지원 사업 민간 사업비는 연례적으로 이용 감액을 통해 타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경은 민간위탁사업비를 타 사업을 위한 여유재원 형태로 운영하는 예산 집행 행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입니다.

농림부 동물·방역 분야, 산림청 및 해경 소관 법률안 등 검토보고 요약 보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산림재난방지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통합 규정하여 관리 정책의 체계화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재난 관련 규정을 제정안으로 이관하고 타 법 개정으로 산림보호법 조항을 단순 삭제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잔존하는 법조문 간 서로 부합하지 않게 되는 문제 등이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소개한 청원은 1980년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에서 해경 72정이 침몰한 사고와 관련하여 순직자 예우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완료된 순직자 예우 및 지원 내용, 관련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 회의자료 폴더에 있는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임재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결산안과 법률안에 대한 질의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효율적인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결산심사 관련 서면질의 자료는 오늘 전체회의 종료 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대체토론 시에 질의한 사항과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은 9월 3일 예정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되어 심사될 사항임을 참고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7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실시하기로 양 간사님과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충북 진천·증평·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부장관님, 지난주 22일 날 제8회 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국에서 모이신 회원님들이 한결같이 쌀값 문제 때문에 아주 시름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때 저녁 자리에서 쌀값 20만 원, 쌀값 하면 20만 원 이런 식으로 구호를 외치실 정도로 아주 쌀값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시름이 깊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날 결국 18만 원 선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결국 정부에서 쌀 시장격리에 대한 대책이 15만t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6월 21일 날 민당정 협의회를 하면서 15만t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중에 5만t은 정부가 매입을 하는 거고 10만t은 농협을 통해서……

○임호선 위원 소비 촉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소비 촉진 등을 하는 것인데 농협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농협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이 8월 13일이었습니다.

○**임호선 위원** 다른 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6월 5만t 매입 계획도 24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에 포함시키는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금년 신곡에 대해서 농가로부터 매입할 공공비축 물량을 23년도 쌀 5만t에 사실은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시겠습니까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상기후가 나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금년 폭염 일수 20일이 넘었고요. 열대야 일수도 역대 최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농민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농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을 물어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하우스 시설 농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하고 무더위 쉼터를 많이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경남 같은 데서는 이걸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반응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농지법 시행령에다가 농업진흥구역이라 하더라도 일부 조금 시설 설치하는 걸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무더위 대피 쉼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시키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12월, 올해 안에는 영농편의시설이 농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호선 위원** 여기 농민 쉼터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럼요.

○**임호선 위원** 폭염으로 인해서 가축 폐사가 심각합니다. 해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금년도 통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보니까 8월 20일 현재 99만 7000마리가 지금 폐사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축사시설 개선이 제일 실효적인 대책이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한번 보시면요. 2019년도에 1167억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이게 계속 감액이 돼서 384억까지 줄어들었어요. 이게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농가 입장에서 보면 자부담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축사시설 현대화를 하려고 해도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지요. 사람한테 무더위 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축에게는 누가 뭐래도 축사시설 현대화가 가장 시급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실집행이 이 정도로 지금 계속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장관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든지 인하하든지 또 사업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이런 활로를 모색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장관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러·우 전쟁 이후에 인건비도 오르고 건축 자재비가 상승하면서 그리고 인허가받기가 또 좀 어렵고 민원도 많고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이어 가지고 절차 집행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았는데요.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 추진방식 개선을 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연부율 조정을 해서 사업 기간을 늘린다거나 또 사업자가 포기를 했을 때는 예비 사업자를 미리 선정을 해 둔다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예산도……

○**임호선 위원** 중요한 건 예산 규모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예산 규모 자체를 이렇게 반도 아닌 3분의 1로 줄여 놓고 지금 축사시설을 현대화하라고 하면, 정부 입장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집행률이 워낙 낮아서 이제 사업 예산이 축소됐던 건데 이렇게 절차 개선하면서 그 예산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30초 남았는데 이것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쓰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시갑 주철현입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주철현 위원** 오늘 제출한 법안 중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이 있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주철현 위원** 여기에 어선들에 대해서 총괄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낚시어선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낚시어선은 전향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선어업을 하고 있는 지금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획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획증명서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 어업규제를 총생산량 관리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 가을부터 우리 여수 앞바다에 떠 있는 낚싯배가 몇 척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350 척이고요. 20명씩 타게 되면 주말에는 거의 7000명이 풀려서 지금 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해요, 어선들보다도. 물론 이상기후 때문에 어획량도 줄고 어종이 다변화되고 복잡하지만 가을부터 봄까지는 낚시어선 때문에 어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을 정부에서 내시려면 낚시어선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공염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이제 집중 논의가 되겠지만 관련 대책을 함께 좀 갖고 오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준비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지금 낚시어선도 어획증명서 TAC 검토 중이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3개 단체가 낚시 관련된 레저 단체로 하나로 지금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소통할 수 있는 연로가 굉장히 좀 가까워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시겠지만 낚시어선이 본래 어민들의 어한기에 대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실제는 이제는 순수한 의미의 어민들이, 낚시어선하시는 분 안 계십니다. 어선을 인수해서 기업형 낚시업을 하는 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해양레저산업으로 별도 분류하고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 외국처럼 어업면허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게 뭘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러시던데 정부가 앞장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난해 8월 첫 해양 방류부터 올해 7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총 5만 5000여t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고 지난 25일에는 7900여t의 8차 해양 방류를 종료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주철현 위원 내년 3월까지 오염수 2만 3000여t을 방류할 계획으로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에는 향후 30년에 걸쳐서 방류될 130여만t의 오염수가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도쿄전력이 ALPS를 통해서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해양에 방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염수 속에는 ALPS로 처리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세슘-134, 스트론튬-90 등 인체에 흡수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에는 ALPS가 정지된 상태에서 5.5t의 오염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일부 설비의 문제로 정전이 발생해서 제5차 해양 방류가 일시 중단된 바도 있어서 일본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 100%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후쿠시마 지자체 70%와 관광·농어업단체 등 일본 내부에서도 해양 방류를 반대했고 우리 어민과 국민들도 바다에서 또 길 위에서 해양 방류 저지를 외치면서 격렬하게 투쟁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은 일본 정부 입장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안전성을 주장하더니 얼마 전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듯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칭하면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고 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제1순위로 둬야 할 대통령실은 본분을 망각한 채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명색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책임지는 대통령실이라면 중국 정부가 했던 것처럼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했어야 하고 국제법과 관행을 무시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서 쓰지 않았어도 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쓰여졌으니까 책임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없었다면 영세한 어업인이라든가 어업단체에다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은 필요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다 말씀 드립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 장관님 입장을 이해합니다마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 것이지 이를 걱정한 국민이나 어민이나 야당 때문에 예산을 썼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원인 행위가 없었으면 국민들의 걱정도 야당의 주장도 이럴 일이 없었을 거예요.

작년 10월 이후 방사능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추궁하기는커녕 되려 국민과 야당의 우려를 괴담, 선동 정치로 펼쳐하고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느냐 이렇게 들이대는 것은 참 국민으로부터 행정권 위임받은 정부 여당으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무지하고 정말로 경망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에서는 우선 국민 불안 해소하는 것이 1번이었고요. 그다음에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해서 수산물과 우리 해역 얼마나 안전한지를 밝히는 것들이 급선무였습니다.

○**주철현 위원**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다행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오염수 대응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환경운동연합의 금년 8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 국민의 76.2%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73.6%고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 찬성 의견이 65.2%로 정부 여당의 입장과 상당히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1년이 흐른 지금 우리 정부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의 사회적 관심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위낙 무관심하고 무대응하니까 그냥 체념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입니까, 처리수입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재까지 오염수입니다.

○**주철현 위원** 예.

1조 6000억 예산 이것이 우리 야당이나 국민들의 반대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본 때문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주 위원님께서 아까 모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과학적 데이터를 국민들께 제시하는 방법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충실히 저희가 올해 43군데를 더 늘려 가면서 촘촘하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쌓아 나가고 있다. 그 결과로 현재까지 단 1건의 방사능 관련된 수치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해수부장관님, 조금 전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입니다. 2023년 8월 30 날 목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목포역 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그날 8월 30 날

오후 2시에 했는데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목포에 있는 한 횟집에 가서 ‘함께 사는 세상 땡땡 횟집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인까지 했거든요. 그게 알려지고 나서부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전까지만 해도 이 당시에 해산물을, 수산물을 먹을지 말지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했다 이 말이지요. 불안을 선동해 놓고 본인들은 가서 회를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저희가 시뮬레이션 자료를 발표한 이유라고 알고 있고요. 그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마 신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경태 위원** 정치인 본인들은 막 후쿠시나 오염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놓고 또 불안감을 조성해 놓고 본인들은 가서 회를 참 잘 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이런 부분에 선동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되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이것을 선동식의 어떤 그런 해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학적으로 이런 부분을 증명해 내고 또 국제사회에 필요한 것 있으면 또 규탄 내지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 그게 현명한 대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 판단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위원**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작년 8월 30 날 목포역의 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 가서 또 횟집에 가서 땡땡 횟집에서 회를 맛있게 잘 먹었다는 그런 야당 대표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평가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어서 제가 농림부장관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살인진드기 문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지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그때 답변을 주셨을 때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올해 7월 30일에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실무협의체를 TF를 구성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인체용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것은 질병관리청 소관이고 동물 단계의 백신과 치료제를 만드는 것은 저희 소관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언론에 나온 것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언론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장관님 존함이, 이름이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백신·치료제 개발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이것 잘못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보가 나왔으면 농림부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조경태 위원 안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게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동물용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동물용입니다.

○조경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혼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농림부가 무책임하다라고 하는가 하면 주로 살인진드기에 의해서 사망되고 피해 입는 사람들은 농민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농민들이 주로 많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민들 말고도 그런데 등산객이나……

○조경태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을 하거나 아니면 산림을 통해서 숲으로 가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사망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주로 우리 농축산부 또는 산림청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병관리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10년 전부터.

한번 PPT 좀 띄워 보겠습니다.

10년 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이게 도저히 질병관리본부, 지금은 청으로 바뀌었지요, 이분들이 도시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따져 물으니까 백신은 2032년쯤 되면 나올 수 있고 치료제는 2028년쯤 되면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밖에 답을 안 하거든요.

제가 왜 장관님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살인진드기는 엄연히 따졌을 때 다른 부처와 비교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굉장히 연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이 인수공통전염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동물에게만 지금 부에서는 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하고 좀 힘을 모아서 협업을 해 달라는 부탁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래서 그 TF에도 질병관리청하고 같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하려고가 아니고요. 10년 전에, 본 위원이 2017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지금 청으로 승격됐습니다만—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요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텐데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거든요. 임상시험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총리한테 건의해서 이거 제대로, 언제까지 빨리 진행시키겠다고 의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국정감사 때까지 어떻게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 질병관리청하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협업을 해서 하려고 하는지 로드맵을 짜서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거는 해야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치사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조경태 위원 치사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30% 정도……

○조경태 위원 아니, 20%. 20% 수준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는 치사율이 몇 퍼센트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억 못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코로나는 치사율이 1~2%입니다. 코로나 치사율이 1~2%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코로나 치사율보다 10배, 20배 이상 높은 게 바로 이 살인진드기거든요. 이거 박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식시켜야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경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감 있게, 지금부터 해도 5년,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주무부처 장관님으로서 특별히 좀 신경 쓰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농도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께서도 쌀값 문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쌀값 20만 원 보장하겠다고 약속 못 지킨 무능 이거는 아무리 비난받아도 성에 차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 미이행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꼼수, 눈속임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서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 정부가 쌀값 안정 차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6월 달에 15만t 쌀값 안정 대책 발표했고 또 시장격리 45만t 하겠다고 발표했고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5만t 격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통합, 다 합하면 65만t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6월 달에 발표한 15만t, 그중의 5만t은 사실상 농협의 재고를 공공비축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어서 이거는 농협의 장부갈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한 바 있고 10만t과 관련돼 있는 대책 6월 달에 발표했는데, 8월 13일 날 농협에서 언론에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내부 방침서 갖고 와 보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갖고 왔어요. 그만큼 농식품부나 농협이 심각한 우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45만t 발표했는데 그 45만t 중의 5만t은 이미 6월 달에 발표한 15만t 똑같은 내용을 이중으로 계상했다. 어제 당정 협의된 내용 보면 이것도 내년 예산 가지고 쓰려고 하고 있는 내용 입도선매한 내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농정을 하니까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실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전달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책임은 국정감사 를 통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격리곡, 양곡관리비 이렇게 두 가지 큰 축을 가지고 정부에서 쌀값 안정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양곡관리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현재 약 2조 3000억 이게 양특회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 중에 정부 양곡매입비가 1조 4000억, 수입양곡대 4800억, 정부 양곡관리비 3900억 등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지출 방식이 달라요. 공공비축미는 정부가 직접 매입합니다. 시장격리곡은 농협을 통해서 매입을 하는데 그게 대행입니까? 그게 법적 성격은 뭔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양곡관리법 제16조 3항에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슬라이드 보여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대로 읽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농협으로 하여금 양곡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농협이 양곡을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적인 내용이에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이게 이 법에 의해서 정부가 실제 매입하고 나면 자산은 정부 자산으로 하면서 외상 거래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농식품부는 농협으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고 비용은 농협이 다 대도록 한 다음에 그 해에 발생되는, 상환되는 이자분만 상환해 줘요, 예산에 반영해서. 이거는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채무가 발생하면 채무 발생 원인과 관련된 내용 모두를 예산에 반영하거나 세부적인 지출원인 행위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갖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용을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 실제 운용하고 있는, 현재 집행하고 있는 내용을 법에 맞게 맞춰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되면 개정안을 갖고 와 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시장격리곡을 매입하잖아요. 매입하면 10년 채무를 지거나 이런 식으로 채무를 집니다. 그 채무를 지는 행위가 방금 읽었던 양곡관리법 16조 3항에 근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식품부는 그게 금과옥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양곡관리법의 대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근거해서 대행을 시키고

있다고 보이는데……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 대행하고 있다면 대행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명확하게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전체 채무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체 채무 계상은 한 번도 안 해요. 재무제표의 결산 내역에만 들어와, 예산에는 어디에도 없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위법적인 요소를 반복적으로 우리 농식품부가 계속하고 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지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회계 질서 문란에 대해서.

그리고 채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매입 약정을 맺든지 농식품부로 하여금 거기 채무 발생과 관련된 근거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보고 싶어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아직 안 가져왔는데 이 부분도 오늘 중에 확인이 되면 오늘 중에 아니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확하게 확인해서 위법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바로잡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농협하고 명확하게 상의해서 자료 제출 정확히 하시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까지 마련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재정법에 의해서도 타 법률에 의한 것을 명시를 하고 있고 그 법률을 저희는 양곡관리법 16조의 근거로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이 그리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재정법에, 법률에 정한 경우 이 내용은 말이에요…… 다른 법률 다 보세요. 구체적으로 채무가 발생한 내용이 다 담기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다른 법률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윤준병 위원 누가 위법이 아니라고 해요, 위법이지?

○위원장 어기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이게 위법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보충질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님 순서입니다.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문금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쌀값 문제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쌀값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도 이해

를 하시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부가 지난 6월 2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추가로 5만t을 매입해서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까 농림부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벼 재배면적 1만ha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올해 신곡 공공비축용 물량 중 5만t을 농협의 23년산 구곡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또 8월 19일 날 쌀 45만t에 대한,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하는 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35만t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45만t 수준으로 규모가 확대된 것처럼 또 보도를 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저도 그랬고 아마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이제야 농림부가 정신을 좀 차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공공비축미 45만t에는 이미 지난 6월 발표한 농협 재고 구곡 5만t이 포함돼 있고 또 밥쌀용 시장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가루쌀 4만t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올해 공공비축미 물량은 36만t으로 22년과 23년에 비해서 농가에 배정될 물량이 턱없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시 구곡을 매입한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이 공공비축을 시행하는 정부의 목적이라는 게 있을 건데 농림부의 2023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추진 방향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공공비축미 재고는 총 쌀 소비의 17~18% 수준을 유지하되 적정 수준의 국내산 신곡을 확보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벼 재배 면적이 1만ha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5만t을 23년산 구곡으로 매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공비축 물량을 재배 면적이 줄었다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시행계획 목표에도 쌀 소비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삼고 있는데, 또한 구곡도 아닌 신곡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3년도 산 구곡 5만t을 농협 재고 물량으로 매입하고 또 이러는 바람에 농가에 배정되어야 할 신곡 5만t이 줄어들어서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쌀값 폭락에 대한 성난 농심이 결국 애써 키운 벼, 논마저 갈아엎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또 논 갈아엎기 투쟁이 있었고 저도 지금 거기에 좀 참여를 해 달라고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침 또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간 재고물량 5만t 추가 매입을 결정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예산 미리 가불해서 쓰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저는 지난번에도 주장을 했지만 정책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인데 계속해서 농민들은 현장에서 15만t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대로 시행도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짤끔짤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농림부의 생각, 발상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질의 주셨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 목포역 앞의 집회를 예시로 드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정치권에서는 오염수가 방출되면 결국에는 사오 년 뒤에 해류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 연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하니 아예 오염수를 방출하지 말자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어떻게 정치 선동이고 국민 호도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염수 해양 방류가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당시에 국민들 불안으로 전국 횟집의 판매가 감소하고 소비위축이 돼서 수산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이 돼서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야당 대표가 횟집에 가서 식사 한번 하면서 나름대로 솔선수범해서 횟집 이용을 독려한 게 문제가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류 전후에 유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소비에 대한 부분들에 큰 폭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선동으로 몰아가고 국민을 호도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정부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말씀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제가 답을 못 드려서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 쌀 보유 재고가 120만t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17~18% 하면 사실은 정부가 80만t 정도 더 사면 되는 정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4년 공공비축계획이라는 것이, 그것까지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24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아니라 24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3년산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 5만t을 포함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누누이 계속 5만t 발표를 하면서 어제도 이야기를 하고 6월 20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수확기 대책을 10월 중순에 하던 것을 9월 초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좀 연동해서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준병 위원님 말씀도 서두에 있으셨습니다만 정부가 20만 원 약속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쌀 수확기의 수확기 대책이었습니다. 수확기에 20만 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작년 수확기에는 당연히 20만 원을 넘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목표를 달성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쌀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때그때 계속 대응책을 발표했다, 손놓고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도 2월에도 해서 저희가 남는, 여분의 쌀은 9만 5000t임에도 불구하고 10만t을 정부에서 매입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쌀값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6월 21일 날 민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정부가 5만t, 농협이 10만t 그렇게 이야기를 했

던 것인데 농협 대책이 빨리 발표가 되지 않으니 시장이 불안해하던 것을 8월 13일에 농협이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5만t에 대해서는 물량 배정들도 다 해서 실제로 빼내는 것이고 5만t은 소비촉진을 통해서 재고를 해소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던 것 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하면서 5만t에 대해서 또 정부가 매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드린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올해는 수확기 대책을 조기에 하겠습니다라는 발표도 같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 산지의 쌀가격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부가 매입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아예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전략작물 직불제를 확대한다거나 소비를 촉진하는 노력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수확기 쌀값을 정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제 수확기가 다가오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나 현장에서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기에 대한 궁금, 의문증이 많거든요.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올해 수확기 쌀값, 수확기까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수확기 쌀값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을 목표를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목표를 정하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작년에는 20만 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대답할 수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적절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야말로 수급을 맞춰서 시장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목표가격을 정해 놓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아니, 작년에는 그러면 왜 그것을 정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작년에는 정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20만 원을 달성했고……

○위원장 어기구 작년에 수확기 쌀값 한 가마에 20만 원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정한 거지요, 그게. 작년에 정하지 않고 정부가 가만히 있는데 시장에서 그냥 수요공급이 맞아 가지고 20만 원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올해 수확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쌀값을 정부가 어느 정도로 가져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셔야 시장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위원님들께서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쌀값, 저도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 쌀값이 갈수록 더 떨어진다 이렇게 농민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도 울부짖음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 신곡 수매

할 때 가격을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농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농림식품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 하면 상당히 저항이 많아질 겁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장관님께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전 장관님께서는 20만 원 선은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공언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 정부기 때문에 정부가 이야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도 쌀값이 떨어지면 계속 담당 국장이나 관계자한테 쌀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주문을 했었습니다.

5년간 월별 쌀값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물론 정부도 쌀값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농민들의 불men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5년간 월별 쌀값 현황을 지금 보고 계시지요? 어떻게 됐든 지금 쌀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5만t을 더 수매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쌀값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차관님, 전문가 입장에서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저희는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반응도 8월 초 들어서 떨어지는 추세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아마 회복세로 좀 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만약에 안 간다 하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제는 24년산 수확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확기 대책을 서둘러서 빨리 하겠다, 평소에는 10월 중순에 했지만 9월 달에 바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덕흠 위원** 지금 5년간 쌀 관련 통계 현황을 한번 보시지요.

쌀 재배면적이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보면 2만ha가 감소됐어요. 그런데도 생산량은 안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감소를 하는데 쌀 생산량은 안 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관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결국은 기상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오히려 느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꼭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전략작물직불제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장관님 말씀하시는 데에 같이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전략작물직불제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잖아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렇지요, 대통령님 공약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올해는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지금 농촌체류형 쉼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지금 돈을 들여서 이것 33㎡를 하는데 사용기간이 12년이란 말이에요. 12년을 하려고 그 돈을 들여서 수도라든가 하수시설 뭐 이런 것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덕흠 위원** 그것을 안 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12년 사용기간을 주고 다음에 점검을 해서 이게 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라면 다시 한 번 더 12년을 연장해 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야만 이게 활성화되고 도시민들이 가서 거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꼭 한번 검토해 주셔서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 부분은 입법예고할 때까지 의견을 조금 더 받고요, 위원님. 관련 부처랑도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덕흠 위원** 글쎄,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렇게 가야만…… 지금 제가 죽 지역에서 얘기 들어 보고 도시민한테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12년 있다 다시 또 철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냐’ 이런 얘기들을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덕흠 위원** 다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있잖아요. 피해업체 지원방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우리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도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서 추진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미정산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할인지원 관련해서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더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에 피해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도 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차관님, 농협하고 쌀 문제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농협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 1분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제가 보니까 시골에서 농협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 이유는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작년 수확기 때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때는 재고가 초과될 것, 초과 생산량을 한 9만 5000t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정부가 10만t 재고를 제거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보면 맞아야 되는데, 농협 RPC가 작년에 쌀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의 RPC에 재고는 많이 있고 민간 임도정공장들은 벼가 부족한데 민간 임도정공장들이 농협으로부터 벼를 사 가지 않은 이유가 농협이 재고가 많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농협이 싸게 팔겠지 하고 민간 임도정……

그렇게 해서 불균형이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하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민간 임도정공장 그리고 농식품부도 들어갈 테니 같이 이렇게 쌀을 판매하는 협약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소비를 좀 잘되도록 시장의 불균형을 좀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 보자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농협하고.

○**박덕흠 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이제 조금…… 늦기는 했지만 농협이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쌀값이 농민값입니다. 쌀 수급 불균형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잡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임미애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미애 위원** 지난 7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독도…… 우리나라,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할 때 일본 정부의 항의가 있었고 이것과 관련돼서 외교부 사안이라는 이야기, 답변서를 받았을 때 제가 강하게 항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임미애 위원** 항의했던 일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때? 해수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기억합니다.

○**임미애 위원** 이번에 또 8월 11일 날 또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언론을 뒤져 봐도 해수부에서 입장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갖지 않으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우리 외교활동에 관련된 것들은 하여튼 일본 외무성에서 우리 외교부로 오는 사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유해서 우리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협의해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입장은 내셔야 됩니다. 이게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 때도 분명하게 국토해양부장관이 자기 입장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서 소극적으로 임하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의심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최근에 언론을 계속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독도 조형물이 자꾸 치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정부가 독도를 지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해양경찰청 차장님!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예.

○**임미애 위원** 지금 2024년도에 우리 해양조사선이 조사를 할 때 해양경찰청에서 확인한 것은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나요?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 8월까지 합쳐서 한 5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5회요?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예.

○**임미애 위원**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까지 16회를 저희가 안전 관리를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7월까지 16회예요.

(영상자료를 보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당시 농해수위 위원이었던 신정훈 의원실에서 해양경찰청에다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3년 8월까지 일본 순시선이 독도 해양조사를 방해한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 자료가 왔어요. 그러니까 18년도에 스물두 번이 있었고요.

잘 안 보이시나요?

23년 8월 달에 스무 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일본 순시선이 열한 번이나 출동을 해서 강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24년도에 해양조사선 해양조사 시 일본·중국 순시선이 조사를 방해한 횟수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읽어 보세요. 뭐라고 왔습니까, 담당이?

‘위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이며 해양경찰에서는 별도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해양경찰청에서 자료를 냈는데 딱 1년 만에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답변이 왔어요.

언제부터 독도가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이어서 해양경찰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8월까지는 관리하던 독도 해양경비 업무가 갑자기 해수부로 이관된 건가요?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저희 직원이 통보를…… 의원실에 보고를 할 때 조사를 방해한 횟수가 저희가 직접, 계속 조사선이 조사를 할 경우에는 경비함정에 근접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적극적인 조치를 합니다. 그쪽에서 부당방송을

하면 저희도 부당방송을 하고.

그런데 그런 자료를 작년에는 제출했던 것이고 올해는 직접……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는 제출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오는 거지요?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올해는 직접 조사를 방해한 것이 있느냐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에 있어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는 제가 볼 때요, 이 자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저희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은 22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각 부서에도 자료요청했을 때 오는 답변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굉장히 불쾌합니다.

오늘 청장님 대신 오셨는데 저는 위원장님께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해양경찰청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해경이 독도를 경비 업무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아닙니다. 전담함정 한 척도 있고 주변의 두 척까지 해서 세 척이 늘 상시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국민들은 의심합니다. 왜 이런 식의……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저희 해양경찰 업무 중에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이 독도하고 이어도 그다음에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 이렇게 광역 해역에서 발생하는 나중에 영토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에 가장 우선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예, 알겠습니다. 꼭 주지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티메프와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그러니까 23년도에 온라인몰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특히 티몬, 위메프에 쓴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 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게 빨만 동동 구르고 언론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왕 농협에다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셨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임미애 위원 돈을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의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고 난 뒤에 급박하게 예비비로 책정되었던 예산 중에 소비 촉진과 관련된 예산은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소비가 줄지 않았으니까 국민이 현명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든가 또 이렇게 국민들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에 일본 상반기 농수산물과 식품 수출액이 4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 35% 줄었고요 홍콩으로는 10%가 감소했대요. 그런데 되게 특이한 것은요 한국에 대한 일본 농림수산물과 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6.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작년에 쓴 것을 한번 죽 보면은요 수산물 위생 관리하는 예산은 양식장 생산단계에 있는 수산물 검사하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49.3%입니다. 그리고 유통 단계 위생 안전 체계 구축하는 사업은요 도매단계에 있는 수산물 검사하는 사업인데요 집행률이 60%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품질 관리하는 사업은 77.3%입니다. 제가 이것 예산 대비 지출액을, 집행액을 해 보니까 56%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민들은요 불안하지만 그래도 어가가 어렵고 그 어려운 마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산물 소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해수, 이 주무부처 장관께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대책들을……

마무리할 테니까 1분 주시겠어요?

○위원장 어기구 예, 마무리 1분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대책들을 마련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 기대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해수부에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50% 정도밖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소비를 하는 것은 정치인의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정치인이나 국민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가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정확하게 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서 우리는 소비를 하겠다는, 어가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역할들은 정확하게 하시고요 수산물 품질 관리에 관한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사능 측정장비 정확하게 갖추어서 국민들 안심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위원장님 그다음에 임 위원님,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한 1분 정도만 주시면 제가 사실관계 조금만 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주셨던 우리 어업인에 대한 그 마음 같이 공감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도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집행률이 57.6%가 아니고 94.9%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7.6%는 전체 예비비 중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장비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까지 장비 72 대 전부 다 마련을 하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검사에 대한 부분부터 이제 강력하게 강화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97%가 소비 촉진 예산이 100%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치를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국민들 의식을 호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비 갖추고 검사 인력 확보하고 실제로 검사하고 하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예산은 56%라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오전 질의는 아홉 번째인 김선교 위원님까지 질반 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결산 관련된 질의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농지임대차사업은 고령·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임차하고 청년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여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하려는 사업이다,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서삼석 위원** 자료화면 1번이요.

(영상자료를 보면)

23년 사업예산 2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집행액은 84억, 39.6%입니다. 최근 5년간 계획 대비 평균 집행률도 52% 수준입니다. 자경 선호 등에 따른 사업 물량 감소와 타 사업 전용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화면 2번입니다, 자료화면 2번.

그럼에도 24년 예산은 수정액 대비 410억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농지연금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23년 348억 원을 전용 받아 사용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거의 매년 계획 대비 300여억 원을 추가 전용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서삼석 위원** 자료가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향후 24년 예산집행은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사업은 집행예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24년 예산은 23년 집행액보다 207억이 축소된 2423억 원에 불과합니다. 자료를 인용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일시적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23년 2907억 원에서 24년 2337억 원으로 570억 원이 축소되어 있는 실정

입니다.

농지 임차·임대 사업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와 연례 집행 부진에도 과다 계상하여 농지 연금과 경영회생지원 사업 등 농업인 수요가 높은 사업들의 예산 부족 현상이 상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고 또 동일 사업에 반복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농식품부의 관심 부족, 인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따라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입는 것이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집행, 잘못된 그런 사태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또 그냥 넘어가고 마는 그런 관련자에 대해서 이제는 일별백계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책임을 지우는 그런 농식품부가 되어야 된다. 왜? 농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동의했으니까 넘어갑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서삼석 위원** 섬 지역에 계신 분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책을 만들어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택배비 지원 사업 관련인데요, 해수부는 23년부터 섬 주민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섬 주민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택배 1건당 육지보다 평균 무려 5 배 이상 택배비를 부담하는 섬 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3년 시범사업 예산 65억 원 중 48억 50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25%에 그칩니다. 아주 낮은 수치지요. 배송비 지원을 이용한 섬 주민 전체 76만 6000명 중 고작 단 2만 7000명이 해당합니다. 프로테이지는 3.5%입니다.

24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3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률 저조로 예측건대 내년에도 불용액이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점쳐 보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섬 주민 택배 수요 부족, 200여 개 섬 지역 민간 택배 배송 불가 등을 그 부진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 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장관님, 이 내용 이해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렇다면 관련 부처나 유관기관하고 좀 더 이렇게 속도를 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기왕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불용액이 좀 덜 나오게 하고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차제에 좀 속도를 내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올해 사업 방식 대폭 개선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률 제고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중의 하나가 지자체와 플랫폼 구축 사업이고 또 하나가 사업 신청과 증빙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를 그때마다 매번 방문해야 하는 현지의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에 대한 것이 팩트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이해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서삼석 위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농진청장님!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서삼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목표를 달성하면 당해에는 수행 안 하는 그런 자료를 냈어요. 그 자료 낸 것 알고 계세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그 상황들을 좀 더 철저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체크를 못 하고 계시구먼.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23년도 성과목표 대비해서 그 사업 신청이 좀 저조한 항목이 있었고요.

○**서삼석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 보세요. 여러 선배·동료 위원들의 이해도 돋기 위해.

23년 84개 세부 사업 중 15%인 13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료입니다. 미달 사업 중 11개는 연구정책국 사업으로 사유는 대부분 전년인 2022년에 초과 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 사업은 2020년부터 성과지표 중 하나인 정책 반영을 4년 연속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전년도 목표를 달성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자료를 낸 겁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낸 것입니까, 자료를 낸 것이 잘못입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4개 정도의 사업이 성과 대비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통상 사업 안에는 15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과제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좀 더 따져 봐야 성과 대비, 목표 대비 성과 실적이 좀 더 뚜렷한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삼석 위원** 아니아니, 지금 질문의 핵심을 비켜 가고 있는데, 전년도에 초과 달성했으면 다음 연도에는 그 달성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렇지요?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서삼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뭐 잘된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확인해 가지고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김선교 위원입니다.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23년 수확기 쌀값 20만 원 달성했는데요 쌀값 하락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비가 주는 것도 한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단수가, 저희들이 단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원인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 농협의 재고 부담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현재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농협의 재고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김선교 위원 23년산 민간 유통량이 303만 8000t 중에서 농협 매입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협이 6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22년산이 61.1%였던 것에 비해 늘어났어요,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농협 및 민간 RPC 상반기 쌀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2% 감소된 것이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농협의 재고 누적이 쌀값 하락의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농협의 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최근에 계속 장관님께서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농협이 5만t 격리 그리고 또 소비 확대 5만t 대책을 발표하면서 하락세는 좀 둔화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농협이 농가에 비싸게 쌀을 구매한 것이 판매를 못 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에 사 달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농협이 기본적으로 자구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요 어저께 협의회 하면서도 저희가 대책 발표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RPC에 경영 합리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김선교 위원 농협이 주도적으로 하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정 부분 그것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 쌀 소비량이, 일인당 소비량이 계속 매년 줄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좀 또 같이 강구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보니까 전략작물직불제를 늘려서 논에서 밀도 심고 콩도 심고 가루

쌀도 재배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지금 밀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한 게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밀에 대한 효과분석을 구체적으로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선교 위원** 저는 콩 같은 것은 이모작 이런 게 가능성은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가능한데 밀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위낙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재배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벼 생산량은 좀 얼마나 됩니까? 몇 톤, 톤수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톤수…… 그러니까 벼 톤수로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김선교 위원** 친환경 쌀은 다 지금 소진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농약도 안 주고 제초제도 안 주고 화학비료도 안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대안도 좀 실질적으로 내서, 지금 내년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증 농가 이런 것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인증 농가가 지금 줄어 가고 있는 추세예요.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대안을 가지고 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추석 전에 수확기 안정 대책을 좀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추석 전에는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김선교 위원** 지난해 8월 24일부터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었지만 과학적으로 어떤 이상이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없었습니다.

○**김선교 위원** 방류 이후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었다거나 국내에 입항한 일본 선박 중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없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또 국제보건기구의 먹는 물 기준과 대비해서 우리의 해역은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해수부장관님, 1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정말 많은 괴담과 거짓 선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김선교 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여러 가지 종류의 비과학적인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로 밝혀진 게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선교 위원 없지요?

그래서 이런 황당한 괴담과 선동 때문에 여러 가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면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는데 언론상 보면 1조 6000억이나 투입됐다고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것이 정말 과학적 근거를 신뢰했다면 1조 6000억의 예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였을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세요, 여러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우리 어업인과 그다음에 어업 단체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1조 6000억 쓴 게 맞아요, 이게? 이거야말로 괴담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전 부처 합쳐서 그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1조 5000억 어디다 쓴 겁니까, 도대체?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고 거짓 선동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언론, 조선…… 일부 특정 신문사를 내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만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1조 5000억 썼으면 일본한테 받아내야지요, 그러면.

1조 5000억 쓴 거 맞아요, 1조 5000억? 6000억 쓴 거 맞습니까, 대응 예산으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정부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어기구 그 사용 내역 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 보세요, 사용 내역. 1조 6000억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썼다고 언론들이 그러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지 그러면 어디어디에 썼는지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자료요구 관련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전에 할당관세 및 TRQ 수입업체와 관련하여 장관께서 개인정보법 및 관세법에 따라 업체 명단이나 물량 등 세부정보 제출이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의원실에 TRQ 수입업체 명단과 물량배정 현황을 엑셀파일로 이미 제출하셨습니다. 콩, 콩나물콩, 녹두, 메밀, 감자 등 품목에 대해서 이미 제출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보면 올해 상반기에 콩은 대상 400t, 풀무원 380t, 샘표 399t 등 TRQ 물량 수입업체들이 전부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양파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을 듯한 양파 등 다른 품목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관세법과 개인정보법이 품목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농식품부가 관세법을 평계로 국회법과 증감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장관님 말씀대로 정말 관세법과 개인정보법이 엄정하게 적용된 것이라면 농식품부가 해당 법률들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콩, 감자, 메밀 등 품목과 같이 양파 등 다른 품목 전체에 대해서도 TRQ 수입업체 명단 제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전에 논의된 할당관세 수입업체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TRQ와 할당관세는 조금 다릅니다. TRQ는 우리가 품목을 정하는 것이라고요, 할당관세는 관세청이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소관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TRQ하고 할당관세는 다릅니다.

○문대림 위원 다른 것 아는데요. 소관이 아닌 것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관세청 소관입니다, 할당관세의 경우는.

○문대림 위원 소관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까, 장관께서 얘기했듯이 개인정보법, 관세법 위반이라는 것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대림 위원 법적인 조항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러니까 법적인 조항이 관세청이 이 부분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문대림 위원 관련 조항, 관련 법적 내용 조항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관련 조항을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제가 찾아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청 입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관세법 제116조이고요, 비밀유지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관세청에 이것을 주실 수 있느냐고 여러 번 문의를 하였으나 관세청 입장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대림 위원** 여기에서 업무상 사용 목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관세 목적인 거지요.

○**문대림 위원** 관세 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관세니까요. 관세를 부과할 목적인 것이지요.

○**위원장 어기구** 잠깐만요. 질의 끝났습니까?

그다음에 문금주 위원님 하시고 임미애 위원님.

○**문금주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그리고 또 이원택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농산물 수입업체 리스트하고 물량 등 일반적인 통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장관께서는 개인정보법을 들먹이시면서 제출을 거부하셨는데요. 농산물 수입업체와 관련한 일반적인 통계 자료가 어떻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고, 백번 양보해서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당장 또 응당 제출해야 하는 자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를 보면 국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할 경우 제3자 정보제공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할 경우 그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 법 규정만을 사유로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반할 소지가 있고 국회의 기능을 완전 무력화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어민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신속한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는 제대로 된 해법도 내놓지 못하면서 부당한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부가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겠다는 선언하고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오전에 임미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반드시 정부에서 농산물 수입업체에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마지막으로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께서 관세법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에 할당관세 품목이 일흔여섯 가지인가로 늘었습니다. 엄청난 품목과 양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밥상 물가가 위낙 오르고 그 시기에 적절한 수급·공급책을 위해 수급 관리를 하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온 수입 물품들이 국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고 정말로 밥상 물가를 잡는 데에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은 농림부의 고유의 업무 중의 하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게 관세청의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한 것 중에 품목도 모른다,

물량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알기에는 지금 장관께서 허위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할당관세 물량을 정하거나 품목을 정할 때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의 요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물량과 품목이 정해지면 그다음에 수입업자가 수입을 요구할 때 농림부로부터 추천서를 받게 되어 있고 추천서를 제출할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가 0으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천서를 써 줘야 하는 농림부는 반드시 그 업체명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없다 하더라도 농림부장관께서는 그동안 한 3, 4년 동안에 할당관세가 대폭 늘면서 이것이 국내 생산기반에 어떻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영향분석이라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러한 의지를 조금도 보여 주지 않으니까 과연 관계부처 장관 맞나라는 의심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관께서는 엄중한 자리에서 허위를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천서를 발급하는 권한은 농림부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참고로 장관님, 업체명, 법인명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문대림 위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리하시고요, 장관님 말씀.....

○문대림 위원 장관님, 아까 어쨌든 할당관세 물량 배정은 관세청 소관이고 TRQ는 농식품부 소관이어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농식품부 소관인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TRQ.

○문대림 위원 TRQ와 관련해서 어떤 품목은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품목은 제출 안 하고 그렇게 구분을 두는 것인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TRQ에 대해서는 다 제출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TRQ 물량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다 드렸습니다.

○문대림 위원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양파 등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직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TRQ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할당관세에 대해서는 이것이 관세청 소관이라 저희도 관세청에 요청을 하였으나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드리는 게 아니.....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콩 등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제출 거부를 당했거든요, 일부는 제출을 받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TRQ와 할당관세의 차이 아닙니까?

○문대림 위원 TRQ와 관련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TRQ에 대해서요?

○문대림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확인해 보겠습니다. TRQ에 대해서는……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TRQ 관련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럼요. 그 자료는 당연히 제출할 수 있고요. 할당관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헌법상의 조항이기도 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에 기업정보와 또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어기구 있잖아요, 장관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지요. 이게 국회법에도 자료제출 관련한 규정이 다 돼 있고요 또 관세법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법들을 저희들이 다 참고해서 이걸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의결을 할지 안 할지 양 간사와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정부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당연히 받아서 드릴 수 있는 거면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도 관세청에 요청하였으나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농림부에서 줄 수 있는 TRQ라도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나머지 국회법을 벗어난 이런 제도들은 저희들이 간사들과 합의해서 한번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에서 종결하고요,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모르고 있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공공비축계획 재수립 및 추가 시장격리를 촉구한다. 농림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쌀값 약속도 안 지키고 농민들이 얼마나 쌀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 기자회견의 내용을 반영해서 정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고 장관님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1년 동안 농사한, 자식 키우듯이 농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쌀값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17만 원이든 18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별 생각이 없다, 그냥 수요·공급만 맞춰서 시장경제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해 왔던 발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과 얼마나 상충

되고 반대가 되는지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난해요?

○**송옥주 위원** 지난해에. 그래서 쌀값 안정이 제대로 되지를 못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은 쌀값 폭락 시에 선제적으로 생산 조정을 하고 사후적으로는 시장 의무격리를 제도화하려는 법안인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와 농림부 차원에서 또 국힘도 그렇고 반대를 하셨어요. 반대를 하셔서 2023년 4월 6일 날 이런 걸 발표했네요. 민당정 수급안정 대책 차원으로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확기 쌀값입니다.

○**송옥주 위원** 수확기 쌀값.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확기 쌀값 20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 당시에는 꼭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수확이 끝난 상태인데 그러면 20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수확기 쌀값입니다.

○**송옥주 위원** 하여튼 쌀값 20만 원 보장을 발표하셨는데 이 자리에 농민단체가 포함이 됐고요. 발표한 것은 4월 6일이에요. 4월 6일 날 수확기에 얼마가 될 줄 알고 4월 6일 날 발표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송옥주 위원** 2023년 4월 6일 날 발표하신 겁니다. 또 이 제도 발표가 있어서 그런지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입니다,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었지요. 이렇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20만 원에서 21만 원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하신 것은 이게 20만 원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수확기 산지 쌀값,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을 2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쌀값을 얘기하는 건 수확기만의 20만 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신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농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 이것은요.

○**송옥주 위원** 장관님, 농민들이 얘기하는 쌀값이라는 부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소비자 가격이 아니고요, 위원님.

○**송옥주 위원** 소비자 가격이 아닙니다. 한 가마에 20만~21만 원은 소비자 가격이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이야기드린 겁니다.

○**송옥주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옥주 위원** 농가들은 1년 동안 이분들이 공산품처럼 공장에서 찍어 낼 수 있는 게 쌀이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확기입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님께서는 모내기나 수확이나 그런 걸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론입니다.

○**송옥주 위원** 얼마나 고생해서 쌀 농사를 짓는데 쌀값이 그러면 수확기가 아닌 때에는 15만 원이나 17만 원이여도 되고 수확기 때는 20만 원이 넘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농가들은 수확기에 쌀을 RPC에 모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송옥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9월 초에 이번 수확기 쌀값 관련된 발표를 하신다는데 그러면 9월 달에 발표할 쌀값은 대략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걸 지금 예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송옥주 위원** 아니, 1~2주 후면 수확기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발표를 못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가격을 발표하는 게 아니니까요, 위원님.

○**송옥주 위원** 가격을 발표 안 하면 농민들이 이걸 뭘 보고 믿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시장에 시그널을 그런 식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에 맞추어서……

○**송옥주 위원** 그러면 시장에 시그널은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급에 맞추어야 합니다.

○**송옥주 위원** 시장에 시그널을 어떻게 주는지를 몰라서 민당정 수급안정 대책에 이런 발표를 하고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에 20만~21만 원을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으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수확기 대책을 저희가……

○**송옥주 위원** 그러면 장관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에는 수확기 쌀값은 20만~21만 원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수급을 맞추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송옥주 위원** 수급을 어떻게 맞추시길래 자꾸 수급 얘기를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그래서……

○**송옥주 위원** 쌀값이 수급 맞춤이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래서 그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밥쌀 시장에서 쌀 면적을 줄이려고 전략작물직불제도 하는 거고요.

○**송옥주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수급이라는 게 공산물도 아니고 어디서 찍어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농민들이 이렇게 하는 건 수급이 안 맞고 늘 농가 안정이 안되고 쌀값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지금

발언을 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론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의무매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 신호를 주어서 쌀 생산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수급이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밥쌀 면적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님께서는 이상한 마인드로 자꾸 말씀을 하시네요. 농민의 입장에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쌀값이 떨어지면 농민이 제일 손해 봅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니까 쌀값이 떨어지면 농민이 손해를 보니까 그걸 정부 차원에서 그 부분들을 보전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면 쌀은 더 늘어납니다.

○**송옥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쌀을 짓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전략작물이라든지 다른 걸로 전환하고 가루쌀에 대한 농사도 지금 다양한 부분을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전략작물직불제를 좀 확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님, 그러면 올해에는……

작년에 혹시 산지 쌀값, 수확기 쌀값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0만 2778원이었을 겁니다, 수확기.

○**송옥주 위원** 10월 5일 날 기준을 보니까 21만 7552원이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확기 평균 쌀값을 냅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장관님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평균 가격을 얘기하는데 제일 높을 때가 21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한 가마당 20만~21만 원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고 농민들과 저희가 믿을 수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셔야지요. 그래야지 시그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노력을…… 그래서 시그널을 그렇게 드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그동안 민당정……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동안 민당정 수급안정 대책과 국민의힘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그널을 너무 구체적으로 줘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민당정 협의회……

○**송옥주 위원** 구체적으로 줘야지 그분들에게 신뢰성이 있는 거지 농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시는지 아세요? 현재 쌀값이 17만 7740원인데 실제로 이렇게 수확이 되면 이 가

격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은 23년산 말씀하시는 거고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수확기 대책을 하겠다는 건 24년산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송옥주 위원**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말장난하세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송옥주 위원** 말장난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옥주 위원** 어쨌든 오늘 이 질의를 보고 많은 농민들께서 20만 원과 21만 원 수준을 맞출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노력을 할 거다, 최선을 다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서천호입니다.

장관님 또 피감기관 여러 실무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선 농식품부장관님께 쌀값 관련해서 질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3개 시군 농협 조합장을 한 50여 분과 3시간을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요 핵심 내용이 쌀값입니다. 그래서 이 쌀값 부분이 정말 우리 농정의 현장에서는 큰 이슈로 되어 있고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토대로 보면 정말 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은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에 만난 적절한 물량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 같습니다.

왜 농정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미 지난 정부 때 한번 겪었다는 이야기지요. 쌀값이 이렇게 폭락이 돼서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극복했고 또 어떤 실패 사례가 있고 또 어떻게 극복이 된 부분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번 쌀값 문제도 시기 부분, 물량 부분, 정부의 의지가, 이 삼박자가 갖춰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려하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시기가 어떤 물량이 또 어떤 의지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속속들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수확기 쌀값 2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목표치잖아요. 그렇지요? 쌀값을 정하는 것은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내일 당장 쌀값이 어떨지도 모르고 16만 원으로 떨어질지 25만 원으로 될지도 모르는 여러 변수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뭐 태풍이 온다든지 아니면 집중호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또 기상이변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국가적 어떤 난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는 수백 가지의 쌀값 결정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목표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쪽으로 정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꼭 10월 초에 21만 원을 보장하겠다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만 원대의 쌀값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추게 되면,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쌀값도 안정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취지로 목표치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쪽으로 답변도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위원님.

○**서천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자료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구자료 한 부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부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현실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자료 같으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구된 자료를 제출을 못 하는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나, 사전에. 그래서 이 상임위에서 논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그 절차를 하시겠지만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서천호 위원** 어제 고위당정회의가 있었는데 참석 안 하셨지요? 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서천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어제 고위당정회의에, 고위당정회의라는 것은 정부 측이 참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국가 현안이라든지 또 민생 현안이 다 이렇게 논의가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논의 항목을 보고 제가 조금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해수면 수온 상승에 따라서 어종들이 집단 폐사한 사항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 데이터를—어제의 기준입니다—어제 17시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서 접수한 내용을 보니까 경남·전남·충남·경북·제주·부산 합쳐서 한 1700만 마리가 지금 폐사가 됐어요. 수정합니다, 2500만 마리입니다. 이 수치는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어족들이, 이른바 수온 상승으로 보이는데 일종의 어업재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수온 대책을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사전에 28도에 우리가 예보를 하던 것을 25도나 낮추고 우리 어업인들이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뒀었는데 이번에 수온 상승폭이 좀 높아졌었고요. 지금 경남뿐만이 아니라 제가 서해안, 남해안 다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액화산소기 보급하는 것들은 충실히 저희가 보급은 했습니다마는 수온 상승폭이 너무 컸다는 것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서천호 위원** 피해 상황은 제가 죽 보니까 결국은 피해 어민들이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지금 이 통계가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서천호 위원** 그런데 재해 수준의 피해나 사안은 우리 어업뿐만 아니고 전체 소위 민생 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사후에 복구 또 사후에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즉시 그 피해 상황의 실태를 조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듣는 그 과정이 상당히 서로 이렇게 더 피해 상황을 공감한다는 거지요. 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상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실태 파악을 한다든지 해서 추가 피해가 없는 부분을 막는 그 과정, 그 절차와 프로세스가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 부분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보면 재해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피해 복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도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 당정협의회 하나의 안건으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심각 1단계 비상대책본부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어가 그다음에 본부에서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피해에 대한 부분들 더 살펴 가지고 추가 피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23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양특회계 수입에서 TRQ 밥쌀용 수입쌀을 판매해 가지고 수익이 1099억 원이 늘었습니다. 농민들하고 쌀값 경쟁을 해서 추가 수입을 낸 것이네요. 그리고 수입 개방 속에서도 식량안보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직불금이 2188억,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집행률이 1.8%입니다. 176억이, 공익직불금 2188억, 공익직불금…… 176억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어떻게 농업과 농민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표적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에 유감을 좀 표명하면서 쌀값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한번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장관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지켜보겠다 하면서 농협에 책임을 미루고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떨어진 쌀값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시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기 위해서 PPT 자료 제출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쌀과 한우 수입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쌀값과 한우값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으로 지금 쌀값을 잡을 수 없다 이것이 앞서 질의하셨던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2년산 쌀값 폭락이 있을 때도 선제적 대응을 미루다가 역대 최대의 시장격리로 예산을 투입했지만 20만 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뒷북 행정으로 농민들을 울리시려는 것인지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쌀값이 하락하자 늑장 대처로 일관하고 이 같은 농업 홀대 정책과 무능한 대처로 타격받은 건 농민들이다’라고, ‘쌀농가와 약속된 전체 물량을 즉각 시장 격리해 폭락을 막고 농업인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라는 이 말과 관련해서 농림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 부에서 아마 한 페이지짜리……

○**전종덕 위원** 예, 그것 봤습니다. 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정부는 단 한 번도……

○**전종덕 위원** 아니, 제가 저기 PPT 띄운 것, PPT 다시 띄워 주세요. 장관님 못 보신 것 같으니까요. PP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 문구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쌀농가와 물량을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전종덕 위원** 아니, 이 PPT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업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지만 앞의 전제들이……

○**전종덕 위원**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도 있고 조선비즈 내용에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쌀농가와 약속한 전체 물량을 시장격리해서 폭락을 막아서 농업인을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후보 때는 유효하던 것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물량을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전종덕 위원** 아까 말씀에…… 아니,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쌀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농림부가 적극적인, 정부가 적극적 대책을 세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전종덕 위원** 이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20만 원 선 회복을 불가능,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농림부에서 제출했다는 이 한 장짜리에 의거해 보더라도 이 정도의 격리로는 실제 쌀값을 잡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작년도 쌀 생산량이 370만t 정도 됐고요. 소비량하고 비교하면……

○**전종덕 위원** 내용을 다 아는 거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9만 5000t인데도 불구하고……

○전종덕 위원 농림부장관님, 정부의 쌀값 목표가 아까 수확기 20만 원 그것은 보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 20만 원이었습니다.

○전종덕 위원 제 말 자꾸 끊지 마시고요. 제가 물어본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산지 쌀값 20만 원 약속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말하는 시장원리대로 따지면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 유지하면 상식적으로 단경기 쌀값은 더 비싸야 맞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맞추면 단경기 쌀값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적극적·선제적 격리조치 해서 값을 유지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종덕 위원 그리고요, 잠깐만요. 마지막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8월에 발표한 보도자료 보면 24년산 쌀에 대해서 45만t을 공공비축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23년산 쌀 5만t이 끼어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4년도산 쌀에 대해서는 또 시장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24년산 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을 40만t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러면 약속을 어긴 것 아닙니까? 예산도 1조 2000억이라고 세웠는데 약속을 어긴 건데요. 그렇게 되면 구곡 추가 물량 격리 조치하고 24년상 공공비축미 45만t 약속을 지금 살짝 끼워넣기 해서 이것 농민들 속이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24년산 45만t의 약속을 지키실 건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5만t의 격리, 정부가 발표한 격리로는 지금 떨어지는 쌀값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도 재고미가 19만t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추가격리를 해야만 쌀값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일단 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액이 이게 아니고요, 24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4년산을 공공매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전종덕 위원 아니 예산 세우면서 업무보고 자료에 다 그렇게 내놓고 당연히 24년산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 23년산을 그렇게 하겠다고 누가 이해를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4년 공공……

○전종덕 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에 대한 쌀값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추가 대책으로 5만t 격리를……

1분만 더 주십시오.

23년 쌀값이 떨어지니 단경기 쌀값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이에 대한 추가조치로 추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5만t의 격리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24년도 예산에 24년도산 매입 물량을 빼서 마치 추가 대책을 세운 것처럼 이야기한 것 자체가 우리 국회와 저는 농민들을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24년산 매입을 45만t 공공비축미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쌀값에 대한 대책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5만t,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제 발표하신 5만t,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 추가로 저는 전량을 정부가 추가 격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6월 21일 날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정부가 5만t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이미 100% 완료를 하였고요. 농협이 10만t 재고 소진한다는 것에 대한 계획이 8월 13일 날 발표가 구체적으로 되었는데 8월 15일 자 쌀값에는 완벽한 반영은 안 되었지만 쌀값 하락 추세가 둔화되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발표한 5만t을 추가 매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비축미 매입계획 24년은 24년산 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21일부터 23년산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감추었으면 속인 것이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다 발표를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24년산 수확기 쌀값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항상 10월 중순에 이야기하던 수확기 대책을 이번에는 9월 10일에 발표를 통해서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기의 평균 산지 쌀값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전망도 하고 필요한 대책도 고안을 합니다. 그러나 목표 가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종덕 위원** 그렇게 따지면 추가 격리는 5만t밖에 안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어기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체로 다 하면.....

○**전종덕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전체로 다 하면 지금까지 정부가 20만t을 매입했습니다.

○**전종덕 위원** 아직 안 했잖아요,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다 했습니다.

○**전종덕 위원** 무슨 소리야, 이제 발표하고 무슨 다 해요, 안 해 놓고?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한 페이지를 드린 겁니다. 23년산 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매입한 것이 20만t이고 농협이 대책을 하겠다고 한 것 10만t을 합치면.....

○**전종덕 위원** 이것 어제 발표했잖아요. 어제 발표했는데 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위원님. 그 히스토리를 죽 써 놨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충분히 의사 표현한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평택 당진항을 동북아의 미래 중심항으로 만들고 평택에 국립해양대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여 당선된 평택을의 이병진입니다.

송미령 장관님, 어제 당정회의 물가 안정되는 겁니까, 이제 농산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사업코드 1071-302 무슨 사업입니까, 1071-30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잘 이해 못 했습니다, 위원님.

○이병진 위원 1071-302 사업코드 무슨 사업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공익기능증진직불입니다. 직불금 사업이라고요, 1071-302 사업코드가. 귀기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 사업코드가요?

○이병진 위원 예, 사업코드. 제가 한국 발음이 나빴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아니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진 위원 사업코드 1071-302 뭐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공익증진직불금.

○이병진 위원 공익기능증진직불.

27년 5조 원 확보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맨날 노력한다는 얘기 나도 할 수 있어요. 23년도 2조 7000억이었는데 불용이 2200억이에요. 8%가 불용됐어요. 알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병진 위원 예산은 뛅니까? 예산과 예비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첫째, 집행 가능성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행 불가 방침입니다. 알고 있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집행 가능성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행 가능성 있게 촘촘하게 불철주야 밤새워서, 과학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 과학적으로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행 불가 방침에 부합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촘촘한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12월까지 1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병진 위원 기본계획 법적으로 국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병진 위원 심의 꼭 받아야 돼요. 앞으로 국정감사 있고 뭐 많잖아요? 시간 많지 않아요.

두 번째, 공익직불금 실제 실행률이 어때요, 실집행률이 어때요? 높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17가지 같은 것을 막 우리 농민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4만 5000건 준수사항 위반 건으로 해 가지고 100억, 2020년부터 4년 동안 100억이 어떻게 됐어요? 또 못 받았어요. 누가? 농민들이. 농민들은 직불금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아요, 몰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압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어때요? 관외경작자는 마을공동체에 참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르신들 기록하는 것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것 안 했다고 5~10% 어떻게 합니까? 감액해요, 과하다고. 차관님은 잘 아시네, 장관님은 입도 뻥끗 안 하시고.

6월에 작년도 귀 기관에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발전방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문제점 뭐가 나왔습니까? 일부 실무자들도 과하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너무 과하게 직불금 경감시키고 준수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저는 말이지요, 부정수급은 물론 부정수급대로 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잘 지키는 분 있잖아요? 의무사항을 성실히 지키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뭘니까? 플러스 알파, 뭘니까 영어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지요. 제 말이 틀렸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병진 위원** 틀렸어요, 맞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이병진 위원** 이렇게 많이 남는데. 저기 산림청은 300억 원이 없대, 뭐 때문에 없다? 임업직불금이 없답니다. 여기 2200억 줬으면 임업직불금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들만 가지려고 그랬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에도 매년 보면 2021년 0.7, 2022년 6.5, 2023년 8.4%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성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장관님, 말이지요. 제가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번 계획에도,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을 하고요. 단계별로 좀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농민들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하시고 정말 공익과 농민을 위해서 직불금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를 제삼, 제사 간절히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진 위원** 해양수산부장관님, 작년 7월 7일 예산 3800만 원을 들여서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안전성 알리는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해서 여론의 못매 맞은 것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38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때 장관님은 해양과학기술원장으로 재직했는데……

PPT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리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후쿠시마하고 1000km 떨어져 있는데 해양학적으로 보면 후쿠시마에서 우리나라까지 2만km 정도 된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했습니다.

○이병진 위원 2만km를 돌아 해류를 통해 우리나라로 온 이후에 아주 미비하고 자연 상태에 있는 방사선과 거의 동일한 양이라고 볼 수 있다라면서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안전하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저기 PPT 아까 나와 계신 분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훨씬 짧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영상 한번 보면서……

영상 한번 틀어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발음이 안 나오네요.

저는 저것 보고 한국말 잘하는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저것……

○이병진 위원 한국말 잘하는 일본 사람, 다 일본의 입장만 거의 대변하는 말씀으로 나온 사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이병진 위원 제 얘기 듣……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일반 국민들이 편하게 이해하게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병진 위원 제 얘기 듣고 끝나……

자,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게 역대 보수정권에서 뭐니까? 안보지요, 그렇지요? 총 칼 전쟁만 안보라고 말하지 말고 식량안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먹거리 이것도 안보지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안보입니다.

○이병진 위원 우리 국민 생명을 위해서 1%나 또 0.1%, 1%의 어떤 가능성성이 있더라도 위험성에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 위험성·가능성을 사전에 우리 알리려고 핵 폐수 방류를 막아라 그리고 수산물 위험 대비하라 이렇게 지적하는 야당 목소리가 괴담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해도 돼요?

핵 폐수 방류에 대비해서 책정해 놓았던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작년에 보면 집행률이 68.5%에 그쳤어요. 8월부터 7월까지 총 7번에 걸쳐서 5만 5000t 후쿠시마 앞바다에 뿐렸고 7800t을 또 방류했습니다. 또 3월까지 2만 3000t 방류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152억 원이 예비비로 추가 편성이 됐어요. 68.5%밖에 안 돼요. 저기 보시면 알 겁니다.

안타깝네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이병진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간의 민원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 부분 잘 파악해서 산림청의 산림청장님 나와 계시니까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잘 마련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익직불금 받으려면 17가지 항목 이게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농림부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자격 요건이 너무 복잡하다.

○위원장 어기구 이 부분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현장 수용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농림부장관님, 쌀값 참 고민 많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이만희 위원 작년에 370만t 생산했고 1년 소비량은 360만t, 물론 초과 생산분량의 두 배에 가까운, 사전 저거도 했고 또 여기에 의무 수입 물량도 있고 기존의 120만t이 넘는 재고도, 비축미도 가지고 있고 농협은 농협대로 사실은 거의 재고가 상당 부분 쌓여 있어서 잡고 있는 이 양곡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관님, 이 양곡은 우리 농민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소득으로 생각하는 분야 기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또 비교적 적은 노동력으로 일정 생산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포함해서 수확기 수확 곡물에 대해서 우리가 20만 원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로 노력한다는 것은 일종의 장관님 마음 속에는 하나의 국민과의 약속, 농민과의 약속처럼 생각하시고 다른 정책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셔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만희 위원 여기 보면 지난번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대책 자체가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나오는 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그전부터도 늘 그래 왔어요. 좀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수확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당겨서 대책도 발표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다른 재정 당국과도 협력을 해 가지고 20만 원 수확기 매입 물량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정부가 유념을 하겠다는 것은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만희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주 후면 추석입니다. 추석 되면 늘상 나오는 얘기들이 물가에 대한 얘기를 또 농산물에 대한 얘기를. 물론 이번에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보니까 17만t 이상 공급을 한다는 게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인데 사실 여기서 어느 한 품목이라도 만약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다 피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또 세밀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여튼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만희 위원 해경 차장님 나오셨지요?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예, 나왔습니다.

○이만희 위원 아까 인사말씀에 해양 사고 2만 1000명을 구조했다고 했는데, 2만 1000건이라고 했습니까?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2만 1000명입니다.

○이만희 위원 2만 1000건입니까?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1000명입니다.

○이만희 위원 1000명입니까?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예, 한 4000건 정도 됩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인명을 구조한 건데, 그게 해양 구조를 할 때 해양경찰의 어떤 세력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고……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민해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민간 어민들 부분의 어떤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예,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혹시 그분들이 그렇게 국가에 대해서 자기의 생업을 접어두고 지원을 하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아십니까?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어떻게 받지요?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과거에는 경찰관에 준해서 줬는데 지금은 최저시급 수준으로 해서 1일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최저임금, 23년도 기준으로 9620원 기준이지요?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예,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합당한 대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저희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가지고 원래 규칙을 개정을 해서, 해수산 종사자 선원 최저임금으로 바꿔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1만 700원.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예,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그래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서서히 계속 증액을……

○이만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해양에서의 구조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대부분 다 악천후 속에서 지원들이 나가서 구조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획기적인 지원책이, 보상책이 마련돼야 된다, 적어도 최저시급, 무슨 기준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소방위 시간외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1만 2926원.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 편성하실 때 더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산림청장님, 카모프 헬기 문제 좀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아직 전쟁 관련된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부품을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건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불 진화 세력들의 절반 이상은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부품 공급상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 헬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는 부분들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걸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곧 겨울 오면 금세 또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더 노력하십시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이만희 위원** 해수부장관님, 지금 여러 가지 지적 말씀들 많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예산 진행 상태가, 원래는 24년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집행률이 낮으니까 25년까지 늘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까지 제대로 집행이 될까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한 138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설계하고 있는 데 27군데 빼면 한 134개 정도에서 지금 공사 중인데 지자체랑 같이 독려해 가면서 협력해서 25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래서 그걸 지난 정부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을 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만희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2개 사업의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그다음에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한 군데 이게 됐으니까 이건 안 돼’ 다음에 ‘이 사업은 안 돼’ 이거 하고는 좀…… 그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얹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갖춰진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한다는 기분으로 같이 좀 이렇게 유연성 있게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쇄빙선 사업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하는 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만들려는 조선소가 아무도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현재 그렇고……

○이만희 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건조비를 10억 정도 넓혀 가지고 다른 사람, 안 들어온 사람 들어와라. 지금 조선업은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호황기에? 이거 늦출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재정당국 설득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의 종료를 전제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71항은 각각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평화의 섬 제주, 제주시갑 문대림 위원입니다.

두 분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역대급 폭염, 고수온 현상으로 우리 농어촌이 기후 재앙을 맞이하고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존경하는 서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가축이 105만 7000마리가 폐사했고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양식 피해 역시 2500만 마리가 폐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물적 피해 이외에 농작물의 생장 피해와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증강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집계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어촌 전 지역이 재난지역 수준임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농림부장관님께서 역대급 폭염과 고수온 현상이 우리 농업 전체에 미칠 영향, 피해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컨대 당근으로 유명한 구좌지역의 경우에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밭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밭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평균 밭아율이 70% 안팎이었는데 올해는 20%에 못 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밭아율 50% 이상 돼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변경돼 있어 가지고 해당 지역 구좌 농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시적으로라도 재해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조치가 가능하지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올해부터 지금 왜 그렇게 활동이 됐는지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가 여러 각도의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차원의 플랜B를 준비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생장 피해 같은 경우는 아마 수확기에 그 피해액들이 드러날 것으로 봐지는데 이러한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근이, 약관이 올해부터 새로운 약관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당 지역 농민들은

장관님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강도형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고수온 피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서천호 위원님 질의에 액화산소 구매비와 관련해서 ‘충분히 확보했다’ ‘지원하고 있다’ 이런 표현 쓰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가두리 양식 하시는 어가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육상 양식인 경우에는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육상 양식에서는 지금……

○**문대림 위원** 아까 장관님의 답변을 들으면 육상 양식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확보되고 지원되는 것으로 얘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현재는 가두리 양식 하시는 어가에게……

○**문대림 위원** 육상 양식 폐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제가 4일 전에 파악했을 때 한 18만 마리 정도 폐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늘어났다고 보는데, 도에서 액화산소 구매 그리고 폐사 광어 처리 수준의 지원 대책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차원에서 아까 충분히 보급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얘기를 육상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많이 서운해할 것이다. 다만 장관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지금 현재 있는 지원금하고 보험금 섞어서 올해부터 지급하는 것 잘 챙기겠고요.

○**문대림 위원** 그리고요 역대급 폭염으로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냉방전력 수요 역시 최대치다,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이 50%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또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농어가가 받아들일 냉방비 청구서는 가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이러한 에너지 비용 부담 급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된다.

송미령 장관님께서도 올해 폭염으로 인한 에너지 증가분에 대해서 산업부와 한전으로부터 전망치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원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문대림 위원** 해수부장관님도 관련한 에너지 부담 증가분을 좀 파악하시고요.

올 예산에 전기료 지원 예산을 56억 반영했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재정당국하고 지금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당의 한동훈 대표께서 사회적 약자들의 전기요금 감면 등 폭염 대책을

강조하셨습니다. 두 분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후 재앙의 최대 피해자가 자연환경에 생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어가들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정, 규정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서 대책들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당 위원님들과 저희들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기후추경이라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내일 정부 예산안 발표하면서 주요 꼭지로 수입안정보험 확대 들어가시지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추석 민생 대책에서 수입안정보험 확대가 포함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81억인데 내년 예산이 2078억으로 편성되는 것 맞습니까?

대상 품목도 9개에서 15개로 대폭 확대하고 9개 품목 기준 가입률이 현재 1% 수준인데 25% 수준으로 늘리겠다, 그러한 목표가 제시될 것이다, 내일 발표가 될 것이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내일 발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문대림 위원** 저희도 환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25배 늘린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작물재해보험인 경우에 현재 가입률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약 50%까지 오는데. 그리고 채소가격안정제도도 7년이 지나서야 23%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 사례들을 놓고 볼 때 1% 수준에서 25%까지 이렇게 전망치를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단 수입안정보험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오랜 기간 했었고요.

○**문대림 위원** 시범사업 기간 내내 제기됐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지금 극복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수확량 파악 체계를 갖추지 못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확량 파악은 품목별로 하면 가능하고요.

○**문대림 위원** 지금 농가 수입이나 수확량 파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상황이고 이게 다시 내년에 25%……

저희 야당에서 제기한 농안법에 대한 거부권, 거부권에 대한 대응 논리 이것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던지는 대책, 블러핑이 아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농가 수입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가격과 수량을 파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농가 수입, 수확량 파악 이것은 기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품목별 수확량……

○**문대림 위원** 미국은 이 제도를 위해서, 이런 파악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진행 과정이 있었다, 그게 내년에 이천몇십억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목표치에 이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잡아도 너무 높게 잡았다, 1년 사이에 1%에서 25%로 올리겠다, 장관님 의지라면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를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을 지금 민관학 협의체에서 만들고 있으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90점을 받는 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문대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아까 옆에 계신 전종덕 위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전에 후보 시절에 하셨던 말씀을 보여 주셨던데 그것 제가 보고드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때 여기 이원택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다 똑같이 상임위에서……

그때 문재인 정부 말에 김현수 장관이 물량을 너무 적게 잡았어요. 국회에서 그때 한 35만t에서 40만t 정도 격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절반 수준밖에 격리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쌀값이 엄청 떨어졌고 또 그 매입하겠다고 한 물량조차 빨리 매입을 안 해 가지고 결국은 대선 끝나자마자 추가로 물량을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기억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래서 장관님, 물량 이것 진짜 가격에 농민들 마음에 상처 주지 않도록 충분한 물량을 적기에…… 너무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적기에 매입하셔야 된다는 것, 타산지석으로 생각하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양수 위원** 그리고 전략작물직불제 그것 올해는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대폭 증대해야 됩니다.

지금 쌀을 자꾸 현재로는 연 밭에 오줌 누기 식으로 격리하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결국은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략작물직불제, 내년도에 대폭 사업 증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해경청장님 안 계시고 차장님, 청장님 오셨으면 내가 할 말 많았는데 차장님 오셔 가지고 확 줄여야 되겠네.

무언 헬기 있지요?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예,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21년도부터……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예, 총 7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런데 21년도면 21년 22년 23년, 지금 만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대당 평균 운용시간이 70시간이 안 돼요.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과거에는 엄청 적었는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 스스로……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대당 몇 억씩 주고 산 거면 충분히 활용하세요.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오류나 오작동이 있으면 새로운 것 잘 구입하시고.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계속 세워 놓을 거면 뭐 하러 삽니까?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직원들한테 조난선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해경에서 헬기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솔직히 바다에서 무슨 사건사고 생기면 응급 상황이에요. 그러면 급히 가야 되면 헬기가 가야 돼요. 중국 배들, 불법 어선들 잡는 것도 헬기가 빠르지요.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예, 맞습니다.

○**이양수 위원** 헬기를 대폭적으로, 경비함 자꾸 늘리는 것보다도 경비함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 될 게 헬기입니다.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예산 담당 부서에 꼭 전달하세요.

○**해양경찰청차장 오상권** 앞으로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어촌뉴딜사업,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은 자꾸 늦어지니까…… 어촌뉴딜사업이 늦어져요. 이게 계속 설계 변경이 있어 가지고 늦어집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데 가니까 너무 영망이에요. 이게 마을별로 도서벽지 어촌들, 어부의 자식은 어촌 관광으로 먹고살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건데 관광객들이 하나도 안 오게 생긴 데도 많아요. 그냥 농어촌공사에다 맡겨만 놓지 말고 담당 부서, 해수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촌신활력으로 지금 넘어가는 데도 뭘 개선해야 되냐면 이게 해양수산과에다만 주고 해양수산과하고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하고 하다 보니까 관광 마인드가 떨어져요. 어촌기반산업에 자꾸 너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지자체 해양수산과에 주되 관광과하고 의무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돈 쓰고 관광객들이 어촌에 올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현재 문체부하고 인력교류를 통해서 레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문체부하고도 중요한데 일선 지자체에서 설계할 때 일선 지자체에서 해당 관광과하고 해야 돼요. 지자체 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지자체에서 일단 의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양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항 준설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항 준설 할 수 있는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수요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양수 위원** 준설을 지금 어촌어항공단에서 하는 것, 내가 보기에는 준설선이 좀 부족해요. 각 지자체에서 포클레인으로, 장비로 그냥 준설하는 것 있잖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 두세 달이면 다시 다 그냥 모래밭 됩니다.

그래서 전문 준설선으로 삼면을 책임지고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준설이라는 게 그냥 바다에 모래 퍼 가지고 다시 채워 주고 하면 허공에 계속 쏟아붓는 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전문 준설선을 좀 보강해 가지고 제대로 준설해 가지고 한번 하면 그래도 한 일이 년 정도는 너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지금 선박은 바다니까 위험하니까 엔진 수리를 한번 하면 무조건 검사를 받도록 해 놨잖아요. 엔진에 고장이 생겨 가지고 수리를 하면 무조건 검사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엔진 수리하고 무조건 자동차 검사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기검사를 받지요.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받아요, 엔진 수선을 해도. 그때그때 검사를 안 받아요. 그런데 배는 엔진에 손만 대면 간단한 거라도 또 임시검사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면 임시검사 안 받아 줘요. 없어. 그러면 또 한 이삼 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배 조업도 못 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과 경한 것들을 가려서…… 엔진에 손만 대면 무조건 검사 새로 받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해요.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예요. 그것은 고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 이것도 지시를 해서 개혁방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양수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딱 한 가지는 최근에 어선 사고의 70~80%가 엔진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점을 조금 더, 한 번 더 보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전반적인 것들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엔진의 주요 부품일 때는 임시검사를 하고 엔진의 주요 부품이 아닌 것은 그냥 임시검사 안 받아도 되게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요, 무조건 다하면 너무 과도한 게 돼 버리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점검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양수 위원**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해 바다는 깊고 서해하고 남해는 좀 낮잖아요. 그런데 수심 15m까지가 마을 어장으로, 공동 어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해삼이고 뭐고 서해안은 15m에서 30m로 하면 많이 나가지요. 그런데 동해안은 15m가 여기까지고 수심 30m 하면 저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15m 안으로만 하니까 해삼이고 종패고 키우면 이게 다 바깥으로 나가는데 눈앞에 있는데도 못 잡는 거예요, 15m 밖이라서. 어민들이 각 어촌계별로 자기네가 뿐린 종패를 십일조 잡수기들이 와서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또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다의 특성을 고려해서 남해나 서해는 못 하지만 동해안은 15m를 30m로 해 주는 것 그런 고민을…… 고쳐 줘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많지만 나중에 또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해삼 문제는 동해안만 잠수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서해안도 잠수기 문제가 큽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장관님, 이 점 잘 유념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제 1차 질의, 양당 간사님이 남으셨는데요.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제가 이것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그런데 국민에게 미칠 우려, 염려 이런 것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렇지만 과학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의혹 제기하고 괴담으로 선동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왜냐하면 무분별한 의혹 제기, 괴담 선동이 우리 어민들,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은 걱정하는 마음에 비판적 의견을 견지하실 수가 있는데 장관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냥 듣고 ‘예, 예’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정부에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으면 일본에게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다’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송미령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정희용 위원** 티메프 사태, 강도형 장관님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티메프 사태에 농수산 분야 전반에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프로모션해서 몇천만 원 수준이 아니고 중간에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많이 크신 것 같아요. 농업 분야는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수산물 분야에서도 금액이 수억 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피해를 본 분들을 제가 만나 보면 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피해 접수 창구 안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안내를 해 줘야 된다, 피해 접수를 충실히 해야 피해 규모를 판단할 수 있고 피해 규모를 판단해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또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것인가를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희용 위원** 그래서 농협에다 맡기셨다고 했는데 좀 더 피해를 세밀하게 집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희용 위원** 그리고 이 피해자분들이 신고하는 것 자체를 좀 껴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왜냐하면 우리 업체가 판매업체지 않습니까, 농수산물과 관련된? 피해가 있다고 하면 거래처에서 ‘경영이 부실하면 불안하네’ 그래서 거래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피해자인데 그런 2차 피해까지 보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희용 위원** 그래서 피해 신고를 좀 비밀이 보장되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쟁여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범정부 대책에 보면 아무래도 소상공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농어업 판매법인이나 어업인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면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구제책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농림부, 해수부 차원에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쟁기겠습니다, 위원님.

○**정희용 위원** 예, 그것은 한번 봐 주시고 어떻게 할지 농림부 차원에서, 해수부 차원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쌀값 때문에 늘 걱정입니다. 그렇지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하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걱정 안 하는 분이 또 누가 있으며……

그런데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문제 해결의 근원이기 때문에 목표가 격을 이야기하는 것도 금액을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냥 버티면 또 금액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드리면 그게 나중에 안 되면 상실감도 있고 또 구조조정도 힘든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아마 장관님이 말씀 못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 또 수확기가 다가오니까…… 올해 또 풍년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풍년이면 참 기분이 좋고 기뻐야 되는데, 땀과 정성으로 벼농사를 지으셨는데 걱정이 커서 장관님께서 농림부 공무원분들, 국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대책을 충실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시는 게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선제적 수급관리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결국은 공급과잉을 해소해야 되는데 가루쌀은 지금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올해 1만ha 목표로 했었는데요, 지금 8200ha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품종 다양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희용 위원** 그래서 가루쌀도 확대하고 밀콩, 우리 수입 의존 많이 하는 그런 작물도 대체해야 될 것이고.

저는 요즘 식품업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장립종 쌀 육성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가공해서 외국에 수출할 때는 장립종으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해 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파는 것보다 우리가 품종 다변화할 때 장립종 쌀을 좀 육성을 하면 식품업체가 그것을 사서 수출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품종 다변화에도 장관님이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품종과, 쌀 품종도 다양화하고 또 친환경 쌀 재배도 좀 늘리고요.

○**정희용 위원**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장립종 문제, 친환경 쌀 문제에도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희용 위원** 지금 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가축·농작물 피해도 크고 그렇다 보니까 농업인들 소득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가축들도 너무 더워지니까 환경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늦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가축 사육 환경에 대한 대비, 단기적·중기적·장기적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희용 위원** 제가 지난 주말에 자두 재배하시는 농민분들하고 간담회 가셨는데…… 경북, 경상도에서, 다른 지역도 비슷하겠지만 자두 농사가 이제 안된다는 겁니다, 너무 더워 가지고 일교차도 크지도 않고 밤에 열대야가 지속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자두가 안 되니까 폐원 지원을 해 달라 대체 다른 작농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자두 농사짓는 분들의 요구는 저는 당연히 수긍이 되고. 그런데 자두 농사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 토양을 농림부에서 내밀하게 분석을 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기온 차가 있고 하면 어떤 작목을 대체해야 될 것인가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갔는지 고도가 높은 쪽에는 작목을 옮리는 거고 과거에는 안 됐지만 지금 기후에 맞는 작목들을 품종들을 자꾸 개발하거나 또 재배기술을 알리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단기적인 대책, 중기적인 대책 또 장기적인 대책들을 세워서 의원실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한 농산물 수급계획 이것에 대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안을 만들도록 TF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과정이라도 위원님께 먼저 설명드리고 12월 말까지는 완성된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당장 생계가 걱정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희용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원택 위원** 정황근 장관님이 쌀값 대책을 얘기할 때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을 1년 2개월을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민당정 협의회에서 20만 원 쌀 가격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정황근 장관님께 왜 개입하냐고 물어봤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원택 위원** 그런데 그때 인정하셨어요.

이것 정부가 개입하는 거였거든요. 원래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이 쌀 가격 정책이다라고 했고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사실 정부가 수급 조절 다 하면서 계속 이 자리에서 1년 2개월간 그랬거든요.

그런데 장관님도 비슷한 얘기 하고 계세요. 20만 원과 관련해서…… 민당정 협의회 때 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황근 장관께 물어봤던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 그때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 쌀 수급 조절 대책이 후행적으로 됩니다, 뒷북 행정. 문제가 터지고 나면 조금 하고 문제가 터지고 나면 조금 하고 이렇게 되니 쌀값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왜? 시장에서 체감이 안 되니까. 농민들도 체감이 안 되고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떨어진 다음에 조금 채우고 떨어진 다음에 조금 채우고 이런 식으로는 농

민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물가 중심의 농정을 하고 있구나, 농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구나,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쌀값을 계속 낮추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민을 대변해서 전달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장관님은 비슷한 말씀 오늘 하세요. 저는 이 지점을 빨리 장관님이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신곡과 관련해서 아까 15만t, 재고 물량 5만t, 5만t 이런 것, 더 이상 구곡 얘기는 않겠는데, 신곡 대책을 9월 15일 전후해서 발표할 것 같은데 정말 선제적이고 규모 있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쌀값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곡 대책도 정말로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을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적정하게, 철끔철끔 하면 안 된다. 정말 올가을, 겨울에 농민들 저항에 시달릴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감하고 규모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수확기 대책 잘 세우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뒷북 대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이원택 위원** 뒷북 대책은 의미가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도 힘들고요.

○**이원택 위원** 수확기에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정권 놓쳤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똑바로 하시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좋은 거다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소비 촉진을 농협에만 접근하지 마시고 쌀 자조금, 저는 쌀에 왜 자조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쌀을 자조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농협은 꼭 쌀 소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쌀 자조금을 만드는 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원택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1조 6000억 원이 투입돼서 예산을 날렸다 이런 건데, 1조 6000억 원은 아까 정부부처에 담긴 예산이라고 그랬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것 해수부 예산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22년부터 합산해서 한 겁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해수부의 예산이지요? 22년, 23년, 24년 치. 해수부가 자료를 준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저희도 있고 그다음에 식약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해수부가 1조 6092억 원, 3년 치 총계거든요? 1조 6000억이 해수부 자료입니다, 타 부처 자료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장관님, 여기에는 방사능 측정이라든가 일부 소비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예산도 들어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정기적이라는 말씀은 어떤?

○**이원택 위원** 여기 수산물 정책자금이라든가 수산물 이력 관리라든가 수산물 품질 관리라든가 수산물 수매 지원이라든가 비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원래 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요.

○**이원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다 1조 6000억을 날려 먹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가짜뉴스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총액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지요. 이게 해수부에서 준 자료에 근거한 거잖아요. 제가 언뜻 보더라도 여기서 한 8000억은 빼져야겠구먼. 8000억, 9000억은.

이렇게 국민을 눈속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이 주장한 것은 아니에요. 장관님이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눈속임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 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를 투기한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게 잘못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까?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라는 거지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잘못이냐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 특히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수산물안전대책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전대책은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안전대책은 해야 되고, 소비도 해야 되고 안전대책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라는 거였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주장하고, 예를 든다면 회를 먹는 것하고 이게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구제역이 있다, 럼피스킨병이 있을 때 그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면 소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부처에서는……

○**이원택 위원** 그건 별도의 대책인 거지요. 제가……

제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과 대책인 거고 그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정부와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 견해 차이에 대해서 쟁점을 갖고 논쟁을 해 왔던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물에 문제가 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제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다음에 해역에 문제가 있다……

○**이원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해양과학기술원 시절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원택 위원** 그렇지요. 조사는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말한 게 과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해양과학기술원에서 4년 차, 5년 차에 온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니,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시점에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4, 5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그것을 과담이라고 지금 현 단계에서 진단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과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과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이원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리 소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원택 위원** 아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소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다.

○**이원택 위원** 아니, 그것은 문제를 제기한 거고……

(「우력이 헤엄쳐서 온다 그랬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우력도 올 거고 해류도 올 거다 이런 비과학적인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원택 위원** 잠깐만요. 아니, 제가……

(「시간 다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1분 더 해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1분 주셨어요?

(「추가질의하세요, 추가질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어기구** 자, 제가…… 다 줬습니다.

○**이원택 위원** 장관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 제기입니다.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 **이원택 위원** 이것은 장관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질의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해수위에서 했던 회의록이나 내용, 속기록을 보시고 책임져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은. 장관님 지금 허위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어떤 허위사실입니까?

(「추가질의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어기구** 자, 장관님……

○ **이원택 위원** 우리 위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니, 그러니까 부처 장관에게도 지금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 **위원장 어기구** 이제 마무리하시고요.

○ **이원택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서 속기록에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 **정희용 위원** 저기서 말하는 것은 상임위 안에서 말이 아니고 전체……

(「전체 누가……」 하는 위원 있음)

○ **이양수 위원** 위원님한테 괴담이라는 게 아니고 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온 것을 괴담이라 그런 겁니다.

○ **위원장 어기구** 우리 위원님들 이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마무리 발언. 위원님들, 자……

○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면 유튜브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지, 왜 상임위에 대고 괴담이라 그래.

○ **이원택 위원** 그러면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민주당한테 사과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 **이양수 위원** 이 중에도 좀 한 사람도 있고……

○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1차 질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 **윤준병 위원** 한 사람 누구? 찍어요, 누구?

○ **위원장 어기구**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 **이양수 위원** 아, 좀 있기는 있어요.

○ **윤준병 위원** 누구?

○ **이만희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몇 가지 얘기해 줄까요?

○ **위원장 어기구** 우리 위원님들, 우리 농업·어업·농민·어민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 **이만희 위원** 한국 유역이 전부 다 방사능에 오염된다 이런 말도 했고, 민주당에서.

○ **윤준병 위원** 누가?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냐고?

○ **이만희 위원** 찾아보라고, 그것은.

○ **윤준병 위원** 내가 왜 찾아봐요, 그것을! 내가 왜 찾아보냐고!

○ **위원장 어기구** 자,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이만희 위원 수산물에, 우리나라 수산물 전면적으로 오염된다……

○위원장 어기구 자, 위원님들 조용히 하시고요.

○윤준병 위원 아니, 누가 그랬냐고요, 그러니까?

○이만희 위원 국민들이 심각하게 건강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종류의 괴담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어기구 자, 위원님들……

○윤준병 위원 누가 그랬어요?

○이만희 위원 찾아봐요, 그것은.

○위원장 어기구 자,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조용히 하시고.

○윤준병 위원 아, 내가 왜 찾아봅니까, 그것을?

○이만희 위원 내가 왜 거기에 대답해 줘요?

○윤준병 위원 아, 왜 나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이만희 위원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가서!

○윤준병 위원 아니, 왜 내가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냐고!

○위원장 어기구 아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조용히.

○이만희 위원 왜 나한테 물어, 그것을!

○위원장 어기구 퇴장시킵니다, 퇴장.

○윤준병 위원 나한테 그렇게 찾아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만희 위원 나한테 물으니까 하는 얘기지!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윤준병 위원 아니, 누가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만희 위원 나중에 찾아보시라고!

○이양수 위원 자, 그만하세요.

○윤준병 위원 내가 왜 찾아봐!

○위원장 어기구 조용히 하세요.

○이만희 위원 그러면 나한테 묻지 말든가!

○윤준병 위원 아니, 왜 나한테 그것을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위원장 어기구 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도 한 말씀 할 수 있도록……

○이만희 위원 시간 지켜 달라니까 시간도 안 지키고 이러고 앉아 가지고……

○위원장 어기구 제가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는 가급적 끼어들지 않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여기 앉아서 제가 느낀 소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1분씩 주지 말아요. 그것 아주 습관이 돼 버렸어.

○위원장 어기구 이게 원래부터 우리 위원이 이렇게 습관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되었으니까, 그랬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김선교 위원 아니, 1분씩 하면 8분이지, 그게 7분이야?

○위원장 어기구 농업·농촌 문제, 어촌·어업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여야가 없습니다. 지금 농민, 어촌, 수산, 해양 할 것 없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 상임위가 더욱더 분발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우리 여야 위원이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여야 위원들이 뜰뜰 뭉쳐서 일본을 상대로 싸워야 돼요. 왜 일본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로 세계적인 민폐를 끼쳐서 공공영역인 공공재산에 나쁜 것을 버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합쳐서 싸워야 되고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야 위원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저는 참 안 좋아요, 불편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가지고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돈도 지금 8차에 걸쳐 가지고 6만 2800t 오염수가 1년 동안 뿌려졌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아마 여당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려가 됩니까? 이게 오랫동안 30년, 앞으로 50년 동안 바다에 뿌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괴담이니 선동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기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1조 6000억 협정 썼다 이게 막 모 신문에 타이틀 기사로 나오고요. 검사 4만 번, 방사능 초과 제로, 후쿠시마 괴담 1조 5000억 협정 썼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니까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짜뉴스입니까?

이것 1조 5000억 썼으면 일본한테 이것 배상, 보상 책임 물어야지요, 우리가. 이것 일본 때문에 생긴 비용 아니겠습니까? 구상권 청구해야지요. 우리 여야가 힘을 합해서 이런 것 가지고서 일본하고 싸우자고요, 앞으로는. 괴담 선동했다, 아니다, 우려다, 걱정이다 이런 것 하지 말고 일본을 상대로……

그리고 1년 지금 버렸는데 앞으로 계속 30년, 40년 버리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버렸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버렸으니 이 문제는 끝났다, 깨끗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우리의 바다를, 우리 지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본 정부한테 여야가 또 정부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왜? 우리가 일본보다 가장 가깝고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국민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싸우지 말고 우리 힘을 합쳐서 일본을 상대로……

○이양수 위원 7분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이양수 위원님, 아셨지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만희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다음에……

제가 끝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뭐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그래요.

○위원장 어기구 아니, 저도 지금 질의 7분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쌀값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야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여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야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쌀값 걱정입니다. 농민들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앉아서 보니까 여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고 질의를 하시면 아주 동감 표시를 해요, 웃으면서, 장관님들이. 야당 위원님들이 똑같은 얘기 하는 데도 야당 위원들이 질의하면 막 그냥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이런 건 옳지 않다.

위원님들이 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수확기가 다가오니까 충분한 시장격리 그다음에 적기에 격리해야 된다. 옛날 2002년도 우리 경험 있으니까 이걸 지금 정부에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책상에 깔아 드렸고, 이게 추석 전인 것 같은데 9월 중순 이전에 수확기 대책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관님이 수확기 이전에 빨리 충분한 물량을 격리해야 쌀값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공감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앉아서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1년간 쌀 과잉 생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잉 생산이, 1년에? 우리가 공급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과잉 생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3년산은 9만 5000t이었고요. 통상 한 20만t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런데 농민들 이런 분들은요 한 40만t, 우리가 수입 물량 들어오는 것만큼 항상 과잉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어떤 분들은 한 100만t 이상 과잉 생산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40만t,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만큼만 좀 빼 주면 수요·공급이 맞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쌀값, 수요·공급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님, 그런데 그 40만 7800t TRQ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밥쌀 시장에는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우리 밥쌀 시장에 과잉 공급되는 게 한 10만t 정도 된다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3년산의 경우는 9만 5000t이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한 10만t만 우리가 타작물 심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좋지요.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t 타작물 심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정부 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그래서 작년에 벼 재배면적이 70만 8000ha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올해에 좀 줄이겠다라고 노력을 해서 타 작물 재배해서……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10만t 관련한 쌀만 타작물로 전환하면—사료작물이든지 콩이든지 밀이든지—그러면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쌀값 문제는.

그렇게 한 1000억 들어간다는 거거든, 1000억, 1000억 가지고 쌀값 잡으면 해야지요. 그것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언제까지 논쟁을 할 겁니까, 장관님?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과잉 생산되는 헥타르가 한 9만ha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9만ha에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해서 물량을 조정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전략작물직불제를 저희도 확대하는 것을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쌀값,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 문제는 여야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발언권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

○**이만희 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것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후쿠시마 방류를 찬성하는 지구상에 사는 국민들이 있으면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잖아요.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요.

○**이만희 위원** 일본 국민들조차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다만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서 이거를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문제니까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의 정도이지 우리가 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찬성해 가지고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괴담이다 이런 점을 들어 가지고 비판하는 지점은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방류를 앞두고 특히 야당이지요, 야당 측에서 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류하면 금방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 부분이 전부 다 오염이 되고 수산물이 전부 다 방류가 되고 또 거기다가 소금조차도 못 먹고 국민의 심각한 건강권에 문제를 끼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집회도 하셨어요.

○**위원장 어기구**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지요.

○**이만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아보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점검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후쿠시마 방류를 찬성하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해수부장관님 등등 해서 현장 많이 다니시고 이런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쌀값 문제는 여야 위원님들 의견이 같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윤준병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어기구** 의사진행발언, 좋습니다.

○**윤준병 위원** 후쿠시마의 오염수와 관련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려하고 그걸 막았어야 되지요.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해양 투기한 내용은 사실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해양에다 방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끌고 앉아서 처리할 수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일본이 더 좀 비싸지만 지구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라, 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 요구를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이지 다른 질타가 아니에요.

○**위원장 어기구** 자, 위원님들.....

○**윤준병 위원**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그걸 가지고.....

○**위원장 어기구** 우리 힘을 합쳐서 일본을 상대로, 그리고 1조 6000억 썼다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받아 내는 데 총력을.....

○**윤준병 위원** 괴담이니 또 뭐 야당에서 어거지로 이상한 얘기를 하니 그걸 가지고 장관이 괴담이라고 동조를 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희용 위원** 저도 잠깐만 구상권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어기구** 예.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께서 구상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TF 만들어 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해 가지고 대책 보고서 작성했고 두꺼운 책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두꺼운 책 안에 보면 그거는 이미 다 이야기.....

만약에 우리가 이를 국제재판으로 끌고 갔다가 지면, 구상권 청구 소송 갔다가 만약에 졌다, 그러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감시하지도 못해요, 이것.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여야정이 충분히 해야 되지 그냥 감정적으로 일본이 미우니까, 했으니까 구상권 청구해야지 이렇게만 했다가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더 큰..... 감시·견제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는 국민들이 알도록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의사진행발언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셔.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현장에서 상주 감시 체계를 처음 요구했었습니다. 저는 그 입장이 맞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걸 거부했고 거부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여 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시료 채취의 객관성 문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시료 채취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고집을 해서 전문인력을 상주시켜서 시료 채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려 줬다면 지금과 같지는 않았겠지요.

정희용 간사님께서 만약에 피해가 생기면 그때 항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때는 늦습니다. 늦어 가지고, 저희 여야 입장이 같을 수야 없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안전을 과학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후에 2년 또는 3년 후에 실질적으로 방사능 오염 피해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입장들에 대해서 괴담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또는 치유를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가 이것은 여야가 공히 머리를 맞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용 위원 저는 짧게 1분 안에 금방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정희용 위원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전문가 상주시키지 못했다고 하지만 해수부장관님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후쿠시마 현지에 우리 측 전문가를 작년 방류 이후에 현지 파견을 26회 했었고 IAEA하고는 화상회의를 지금 4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괴담이라고 이야기했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역사적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반대로 괴담을 이야기해 놓고 책임을 안 지는 경우, 성주 참외, 사드 참외, 전자파 참외, 그 당시에 민주당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선배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다 했습니다. 그 괴담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과학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까지 도쿄전력이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들을 은폐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ALPS가 걸려 내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양수 위원 다시 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정회하시지요. 또 리바이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우리 서로 여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ALPS 장비 자체가, 설비 자체가 25개 중의 24개가 고장났던 사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줘야 되지 이것을 괴담이라고 해 버리시면……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ALPS를 절대 믿을 수 없다, 완벽하게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오염수가 나쁜 거잖아요. 좋은 거면 얼마든지 바다에 버리라고 할 텐데 나쁜 거니까 우리는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컨트롤 잘하고 반대하고 일본한테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2차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감사합니다.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장관님들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관련해서 기본형 직불금의 불용액과 미집행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장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일단은 자격요건이 상당히 미충족돼서 못 받으시거나 혹은 농지가 감소하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임업직불제를 받기 위해서 농지가 감소된 면적이 한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저러한 여러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단가 체계도 높이고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안으로 개선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편성 단계에서부터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하여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데 이것을 또 이렇게 원인을 보면 지역 농·축협에 분담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원인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관님, 어때세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서 일선 지역 농·축협 분담률을 좀 낮추고 국가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지금 이 채소가격안정제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가격 급등락 시에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23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안정 때문에 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나 농업인 부담액이 좀 많아서 그것도 가입 물량이 좀 정체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예, 제가 국감 때도 한번 살펴볼게요.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금주 위원 그리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나름 좋은 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도 보면 대형 마트에 지원된 할인 예산 908억 원은 약 3628억 원의 연간 판매액 증대효과를 가져왔다고 추정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나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사업예산, 유통사들이 큰 이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의무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 여부나 산업분류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형

마트나 대형 온라인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 중소형 마트나 일반 온라인몰들이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의무들을 부과받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소형 마트나 전통시장까지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자체 할인행사 등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어선건조지원센터 건립 사업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금주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국가직접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는데 해수부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것 재정에 대한 부분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한번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초에 고풍군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 이미 국비 100%로 추진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풍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이걸 갑자기 지방보조사업으로 해서 지방비를 30% 부담하라고 이렇게 지금 확정이 돼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해수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것 해수부에서 필요해서 지금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것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제가 예결위 상황에서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1분 주시지요.

○**문금주 위원** 제가 예결위 과정에서도 기재부를 상대로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중요한 것은 해수부 의지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국가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농림부장관님 열심히 하겠다는 그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의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책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것 한 장짜리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보면 계속 지금 한발씩 늦어요. 그래서 이번 금년도 대책에서는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또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정말 농민들께서 시름 없는 추석을 보내 주시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당 간사님들 합의에 의해서 3차 질의는 없습니다. 없고, 2차 질의만 있는 데요. 가능한 한 5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철현 위원 농림부장관님,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쌀값에 대해서 정말 농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절실합니다. 이게 수확기 쌀값보다 거의 쌀이 떨어져 가는 시기인 춘궁기 쌀값이 더 낮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우리 현주소인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21만 원 이상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꼭 지켜 주시고.

그다음에 영농형 태양광이 지금 농업·농민들이 유일하게 살아갈 현시점에서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심 갖고 하여튼 윤석열 정권 내에 이 부분을 좀 풀어서 농민들이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도 할 수 있게, 그래서 농촌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대책을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리고 그것은 산업부의 REC 계획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주철현 위원 그래도 장관님이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 주철현 위원 산림청장님께, 아까 카모프 헬기와 관련돼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22년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관세청이 수사를 하고 최근에 기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소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 산림청장 임상섭 예, 금년 4월 5일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철현 위원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까?

○ 산림청장 임상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주철현 위원 특정법인데 괄호가 뭘로 돼 있던가요? 관세포탈인가요?

○ 산림청장 임상섭 사기로 돼 있습니다.

○ 주철현 위원 사기로 돼 있지요? 그 말은 곧 이 특정 업체, 기소된 업체가 산림청이나 소방청이나 해경청, 카모프 헬기 보유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기 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산림청장 임상섭 예.

○ 주철현 위원 그렇게 되면 사기당한 피해자로서 사기당한 일정 부분을 구상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 산림청장 임상섭 예, 범죄사실이 확정이 되면 횡령, 배임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조달청 통해서 부정당업체 지정 요구하는 것, 공개경쟁 확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체공급자 확대하는 것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철현 위원 그런데 웃기는 게 최근에 공문을 봤더니 국토부로부터 긴급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국내 전문정비업체. 그걸 그 업체하고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대안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카모프 헬기가 10대 정도가 못 뜨고 있는데요. 그것을 최대한

뜰 수 있도록……

○주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정비업체가 여기밖에 없냐고요? 아니, 그게 사기 정비로 해서 기소된 업체를, 또다시 거기다가 정비를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세한 질의는 다음에 할 텐데요.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 좀 해 주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것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수부장관님께도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이 살아가야 할 방법, 우리 전남 같으면 제가 도당위원장이기도 한데 살아갈 방법이 영농형 태양광하고 해상풍력밖에 없어요. 해상풍력을 빨리, 여수 같으면 11개 업체에 4.85GW 허가가 나 있는데 이것 빨리 생산해서 끌고 올 수 있게 송전선로 문제라든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한없이 이렇게, 5년을 갈 거예요, 10년을 갈 거예요?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셔야만이 전력을 생산해서 끌고 와서 재생에너지 활용을 해서 여수석유화학산단 돌린다든지 신수종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해야 될 건데 전혀 지금 허가만 내놓고 도대체 어떻게 선로를 구축해서 끌고 올 것인지에 대한 아무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고 처박아 두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해 주셔야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산업부랑 협업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허가를 내 주시지 말든지, 허가를 냈으면 빨리 발전할 수 있게 여건 조성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어민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법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엑스포 정부 선투자금 일시상환 문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잘 좀 상의를 해서 공공개발 시작을 했으니까 마스터플랜 용역을 마친 다음에 일정한 계획을, 재정 투융자계획을 세우고 그 기본하에 상환 계획을 하든지 재투자를 하든지 할 수 있게 잘 협의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우선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정적인 부담이 없도록 재정당국하고 지금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좋은데……

여수신북항 사업이 제가 여수시장 때 전에 시작한 사업인데 원래 4년 전에 끝내야 할 사업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거든요. 봤더니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재공사가 되고 또 업체가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떻게 빨리 끝낼 수 있을지 또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전기차 선적 제한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돼 있는데 해수부에서 내려보낸 지침을 보니까 50% 이하 충전율만 하는 걸 권장을 했던데 또 산자부장관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공개리에 반박을 하셨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운송 기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 해수부에서 하는 것은 운

송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 이상 됐다고 해서 화재가 날 위험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산자부장관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이 틀린 거지, 이렇게 되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닙니다. 소방 관련된 참고문헌을 따라서 저희가 한 거고 그 다음에 수출하고 있는 카캐리어 기준으로 저희가 설정해서 지방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선사들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주철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주철현 위원** 그렇게 지금 산자부에서 발표해서 두 부처가 충돌하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서면질의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조경태 위원**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재선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조경태 위원** 그런데 재선충이 일종의 소나무 AIDS라고 할 정도로 이게 한번 딱 걸리면 못 살아나잖아요, 회복이. 맞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심각한 데에 비해서 정부가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선충이 많이 발발하고 있는 경상북도 쪽에 다녀왔거든요. 경주시하고 영덕군 이쪽으로 죽 갔는데 실제로 저렇게 나무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니까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이 정부의 방제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꼬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농림부장관님도 같이 들어 주시면 좋은데요.

이게 보통 보니까 완전히 박멸을 시켜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7 대 3 매칭으로 예산을 주는데 국비 예산의 한 80% 정도 수준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배정 방제 예산의 약 154억 정도가 부족하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박멸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한 1160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도 약간 못 미치는 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지금 보면, 재선충병 피해 현황에 대한 도표 한번 보실까요. 특히 경주시·포항시·안동시·밀양시 이렇게 빨갛게 표시돼 있는 저쪽 지역이 심각하고요. 또 이게 산림청의 자료입니다마는 제외된 게 강원도도 보니까 지금 현재로 재선충 감염목이 약 1만 1654그루인데 이 중에서 3분의 1인 3660그루 정도가 예산 부족으로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저기 빨간색으로 된 지역을 저희가 극심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극심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한 그루, 한 그루 방제를 하는 게 아니고 구역 단위로 해서……

○조경태 위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걸 협업해서, 이건 박멸 수준의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리고 이게 재선충에 저항할 수 있는 소나무 품종 연구를 해야 되는데 2006년부터 했어요. 했는데 아직까지도 걸음마 수준이거든요. 왜 그러나 봤더니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원이 불과 2명밖에 안 되고 예산도 1년에 2억밖에 안 됩니다. 해수부나 농림부에 필요 없는 기관들 만들지 말고 이것 진짜 연구원들 좀 더 확충해 가지고, 예산 확충해서 품종 개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2명에 2억 원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 표에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해서 재선충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도록 많이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조경태 위원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수리조선 사업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선박을 수리할 때나 해체할 때 보면 각종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특히 중금속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본 위원이 있는 지역 사하구만 해도 수리조선이 청에서 관리하는 게 8곳이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관리 8곳, 16곳입니다. 대한민국 이런 데 없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해수부가 그동안에 이 지역을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 온 거예요. 최근에 사하구청에서 저희 자료 받았는데요. 이게 아연과 납이나 카드뮴 그다음에 수은과 같은 중금속에 이미 오염돼 있다는 말이에요.

PPT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토양에만 오염됐겠습니까? 바다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꾸 다른 나라에서 오는 오염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수질에서 나오는 이 오염수에 대해서는 왜 정부가 제대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접지역의 석면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20% 정도가 지금 석면에 중독될 위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극심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해수부의 방안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관련 사실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고요. 현상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부터 계속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부산항 신항 쪽에 수리조선소를 건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태 위원**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형선박 수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직까지는 소형선박은 대상은 아닙니다.

○**조경태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대로 방치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개선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개선방안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찾아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보통 요즘의 트렌드가 보면 친환경·친항만이잖아요,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 개념을 봤을 때 친환경의 항만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다만 지자체하고 현재 있는 수리조선사들의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공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데 같이 얘기해 가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경태 위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찾아보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 가지고 국정감사 때까지 그것 한번 잘 세세하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1주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있는데 농식품부장관님이나 해양수산부장관님, 혹시 예전에 논란이 있었던 내용과 관련해서 광우병은 괴담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나요?

농식품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은 기억이 희미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본인들이 어떻게, 장관으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은 전혀……

○**윤준병 위원** 괴담은 아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해수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또는 전문기관에서 자료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비과학적인 얘기들의 총합을 일컬어서 아마 그렇게 명칭으로 붙이는 것 같습니다.

○**윤준병 위원** 저는 결과적으로 이미 지나간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없었다면 우리 국민들의 위생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수입 허용 조건이 아마 통용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3년도 12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광우병 의심 사례가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육가공 수입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2006년 1월에 미국 압력이 계속되자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 수입 재개를 시켰습니다. 이후에도 노무현 정부는 그 이상의 내용은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2008년 3월에 당선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조건들을 허물고 30개월 이상은 물론 뇌척수, 머리뼈 등 특정위험물질까지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우려성을 쳤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수용해서 이명박 정부도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광우병 괴담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의 내용을 담보하고자 했던 노력을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지요.

저는 이 내용과 연계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한 내용보다 훨씬 더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수용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에 해양 투기가 지속되고 일본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해양오염의 임계치를 넘고 그래서 전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되면 아마 엄청난 평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윤준병 위원** 잠깐만요.

송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쌀 정리 또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 얘기가 꽤 있었는데 수확기 쌀값 책정할 때 9만 5000t 잉여 물량 있을 걸로 예측하고 시장격리하고 이렇게 20만 원 담보가 될 거다 예상하고 조치를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1년 동안 내용 보면 수확기를 제외하고 쌀값이 하락했습니다. 수확기 때 쌀값이 20만 원 보장됐는데 이후에 떨어졌다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어요, 안 되는 이유도 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가 약속을 한 내용들, 또 쌀값을 1년 내내 담보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은 정부의 무능이거나 의지 부족이거나 이렇다고 저는 평가해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답변을 하시던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농식품부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어서 재고 물량과 관련된 얘기들, 특히 농협에 쏠림 현상이 있어서 이것 처리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재고는 잉여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재고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내용과 관련된 처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협에서 맡아서 그것을 처리하든 아니면 개인 민간업자가 처리하든 아니면 농민이 보관해서 처리하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쌀값이 유지되는 것이 온당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가 열정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촉구하고 이렇게 담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런 내용 없이 정부의 노력, 제대로 안 돼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 하면 법·제도적으로 만든 내용이 농민을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물론 선제적 생산조정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해서 제대로 안되면 사후적 시장격리라도 해서 쌀값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장관님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두 분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답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예, 그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수확기에 산지 평균 쌀값 20만 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농협이 말하자면 농가들한테 수확기에 쌀을 다 산 거지요, 매입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정부 양곡으로 산 것 제외하면 사실은 농협이 가지고 있는 게 민간 유통량의 65%를 농협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확기가 지난 다음에 쌀값 하락분은 농협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판매가 원활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재고 쏠림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쌀값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3%가 안 되는, 초과 생산량 3%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0만t을 샀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시장 상황 보면서 농협에도 자체적으로 재고소진을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정부도 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결국은 정부가 20만t을 매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 생각은 그런 겁니다. 정부가 재량 매입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이 양이

많고 가격이 자꾸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등을 통해서 의무매입을 정부가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쌀 재고는 더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윤준병 위원 하나만 추가 말씀 드릴게요.

정부가 찔끔찔끔 하는 것도 문제고 당초 6월 달에 민주당에서 위원들이 15만t 시장격리 선제적으로 하라고 할 때 안 하셨어요. 했으면 지금 훨씬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찔끔찔끔 하는 내용도 15만t 한다고 그러면서 5만t 또 사실상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매입했고 이후에 45만t 매입한다고 5만t도 똑같은 것 중복해서 초과했고 15만t 중에 10만t 농협에서 한다고 맡겨 놓고 제대로 못 하고 실질적으로 금년 들어와서 지금 시장격리한다고 총량 하면 공공비축미까지 포함하면 한 70만t 되는데 그중에 55만t 중에 한 15만t은 허수예요. 그렇게 행정을 하면서 그게 무슨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대책 발표했다고 자꾸 반복하고 농민들 눈속임하고 그렇게 꼼수로 합니까? 그런 걸 제대로 하시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제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꼼수를 하거나 눈속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윤준병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윤준병 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위원장 어기구 올해 수확기 대책을 9월 중순 이전에 확실하게 발표하신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안 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저에게는 기회를 안 주십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 장관님 하시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류 초기에 우리 어업인들 그다음에 수산업계 얼마나 마음 졸였습니까. 과학적인 근거 있는 자료 나와서 이제 좀 마음을 가다듬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어업인들, 수산업계 다독이면서 수출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준병 위원 괴담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

○위원장 어기구 괴담이라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충북 진천·증평·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 방금 좋은 말씀 주셨어요. 작년 이맘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됐는데 역대급 예비비 편성이 됐잖아요. 저는 편성 잘 했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예비비 편성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집행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예비비를 편성하되 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94억의 역대급 예비비가 편성이 됐어요. 편성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였고요. 이중에서 한 950억 정도는 소비 촉진이니까 이것은 굳이 어떤 안전과 관련됐다기보다는 국민분들의 우리 해산물에 대한 소비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고 또 우리 어민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었기 때문에 잘 집행이 됐고 100%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성격이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안전관리 쪽은 산지위판장 수산물안전관리사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산물위생관리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두 개 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용률이 왜 많았느냐 하면 산지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사업의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체 수요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 전북 이외에 신청을 받지 않아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었고 또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을 통한 방사능검사도 2~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수산물 신선도에 영향을 미쳐서 검사방식을 또 바꿨고. 그렇지요? 그리고 방사능검사 필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 자체를 변경을 했어요, 사업 방식을. 왜냐하면 역차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준비 부족은 보완을 거쳐서 내년부터라도 본사업에 반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예비비 사업이 아니라 일반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맞습니다. 보다 정확한 수요 분석, 수요 예측 통해 가지고 내년 사업부터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지요. 본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께서 시간 때문에 말씀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전기차 포비아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금지 이런 표지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왼쪽 사진 보이십니까? 이게 통영 선착장 사진이거든요. ‘오늘부터 전기차 선적 불가라네요. 이유를 물어보니 전기차가 불타면 배가 전부 타서라네요’, 옆의 것은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전기차 선적이 불가함을 양지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기차 선적은 불가한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50% 이하로 저희가 권고 사항을 내렸던 이유는 전기차 사고를 보고 완전히 문을 닫아 버릴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해소하고자 긍정적인 측면으로 권고를 했던 겁니다.

○**임호선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선착장마다 아니면 이렇게 지역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전기차 자체는 아예 선적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어떤, 7월 4일 날인가 예방지침을 내려보내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50% 충전이 됐으면 이거는 선적의 51%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전기차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막 항마다, 선적사마다 전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행정지도라든지 어떤 걸 통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못 느끼게끔 해 주셔야 될 책임이 있으시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어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각 지방청을 통해서 선사들과 전부 다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태우게끔 하는 게 아니라 50% 이하로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끝났습니다.

○**임호선 위원** 전기차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무리하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한전에서 연구용역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수립보고서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봤습니다.

○**임호선 위원** 저도 봤거든요. 저는 무척 심각하게 봤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농사용 사용전력 판매실적을 봤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 보니까 이게 9467억 원을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판매단가는 농사용 갑·을 평균이 46원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22년도에는 1조 2000억으로 늘어요. 23년에는 1조 5500억으로 늘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이 그리고 또 이제 판매단가도 75원으로……

○**위원장 어기구** 지금 5분 줬습니다. 5분 별도로 줬어요.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하세요.

○**임호선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농업경영비에서 차지하는 광열비 비중이 160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수립연구보고서를 다 읽어 보면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우리 농가 부담은 커지잖아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내용도 그렇고 전기·수소 농기계 개발도 그렇고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정반대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농업정책 앞으로 방향이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스마트농업 확대, 그러면 이건 전기를 상당히 쓸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서요. 저희들도 주목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그 용역은 용역일 뿐이지 개편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부, 관계 부처랑 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 농민분들께서 제일 체감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런 용역연구를 추진하는 내용부터 그 과정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저는 아닌데요.

○위원장 어기구 송옥주 위원님하고 바꿨군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순서를 바꿔 주신 서삼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질의를 여야 없이 다들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텐데 이게 보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서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선동으로 밝혀졌다라고도 발언을 하고요.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수산물 소비가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선동으로 밝혀져서 그러면 해수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이런 대책 예산이나 그런 걸 더 이상 편성을 안 하실 건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닙니다. 국민건강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옥주 위원 그렇지요? 거짓선동이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난번 질의할 때나 아니면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것은 올해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지금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잘못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송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정치 조직이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이긴 하지만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어느 나라 대통령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특별히 보니까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수산물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현 정부가 친일 정부 더 나아가서는 중일 정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9월 달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한다고 해요. 이 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냐하면 1년이 되자마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유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는 부분들, 수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완화시켜 달라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고 이게 방한을 해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후쿠시마현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은 지금 공고하게 강고하게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산물들은 들어오는 케이스마다 계속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산물이 점프해서 이게 친일이다, 중일이다 가는 것은 장관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게요, 곤란하시기는 하지만 많은 국민이 이렇게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니까 독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독립운동에 대해 펌훼하거나 광복회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친일 정부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수산물까지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겨냥해서 이런 장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을 비롯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좀 더 관심 갖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거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짧게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면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식탁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전액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이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우리나라 해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협받고 있고 많이 지금 초미의 관심인 부분이어서 이 예산을 내년도 편성을 할 때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된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에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는 부분이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농식품부장관님, 한우 사육 규모가 작은 축산농가일수록 손해는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정부가 한우협회, 지역농·축협과 함께 한우암소 자율감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가 잘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한우 사육비 중 사육값이 50% 정도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정부 차원에서 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 연장도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예.

지난 7월 3일 한우협회 등 투쟁과 관련해서 한우암소 2만 두 긴급 수매를 요청했는데 정부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입장은 수매 대신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을 좀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에 이롭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것은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2만 마리를 정부가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는 결국 시장에 내놓게 되니까요 그게 한우 가격을 올리는 데는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그보다는 이 한우는 가격 여하에 따라서 소비의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소비 촉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를 하는 것이 한우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투 플러스 그것은 한 140만 원 정도 이익이 된다고, 이것은 그냥 약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등급 한우의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저희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숙성육 시장도 앞으로는 조금 더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 플러스 등급 중심의 등급 체계도 개편을 해서요, 식생활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숙성육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품질 기준도 만들고 한다면 한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숙성육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또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직불금 예산이 7년 동안 동결이 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내년도에 단가 인상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단가 인상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좀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친환경 농업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추세가. 그런데 각 지자체 보면 친환 그것은 별…… 농업기술센터하고—지자체요—그 친환경 농업정책을 다루는 데하고 합해서 그것을 합병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여기 농촌진흥청장도 있지만 거기는 지도사 아닙니까, 지도관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합해서 지자체장들이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보다도 잘 알지 못하고 농업 자가 들어갔으니까 같이 합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분리할 그러한 용의는 있으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친환경 농업은 하여튼 확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농업재해보험 발전 5개년 계획 시 반영도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그래서 과감한 제도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실경작 인증 필지 기준으로 직불금 중 1순위로 지급하는 방안—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그리고 농지 임대 시 친환경 농업인을 우선순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친환경 농지에 대해서는 임차 가능하도록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상 예외로 두도록 하는 방안, 또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임차 시 양도세 감면 특혜를 마련하는 방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김선교 위원님 시간을 잘 마쳐 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집행률 저조 건에 대한 것 2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사업 집행률 제고 건과 관련된 건데요. 2023년 29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5억 800만 원을 이월하고 8억 5000만 원을 불용했어요. 절반 정도를 집행했는데 그 이유가 농가의 자부담 능력 부족이다라고 이렇게 농림부가 밝히고 있거든요.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20, 그다음에 지방이 30, 농가 자부담이 20, 융자가 30이라서요. 자부담 부담이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기왕 해 줄 거면 우리 속담에 얘기를 봐 주려면 엄마가 올 때까지 봐주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런 패턴을 농림부가 좀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고추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라도. 안 그래도 수입산 고추로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률 제고 방안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운 고추보다 더 매운 고추산업 정책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산사태 위험 방치를 하고 있다라는 본 위원의 지적과 관련된 얘기인데 23년도 긴급벌채사업 실집행률이 36%예요. 이월액이 약 41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유는 산주와의 연락 두절 또는 부동의로 인한 사업 진행 불가라고 산림청이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산림자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 법이 작년 12월 21일 날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법 시행 이후로 단 1건도 관련된 그런 이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삼석 위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는 했는데 어쨌든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서 법을 만들었고 발의를 했고 또 귀 청에서 동의를 했던 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를 들어서 원칙에 반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유는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알아요.

그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자인 본 의원이랄지 아니면 여야 의원님들한테 그런 설득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청에서는 임의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률 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직무태만을 넘어서 포기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안을 마련하세

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두 장관님께 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폭우·고수온으로 하늘·바다·땅 그리고 사람마저도 상당히 시름을 이렇게 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타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특별히 농수축산림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측 가능했던 일들이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대안 마련을 위해서 속도를 좀 내야 된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수축산림인들은 이 자체가 산업이고 생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들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야 되고 그 동원 자체를 거듭 속도를 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보장으로 소득 안정을 꾀해 줘야 되고 재난재해로부터 생계의 안정을 더 이상 위협 받지 않도록,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재앙과 화를 면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최근 피해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1분 더요?

○서삼석 위원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과 쌀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여야 간의 견해와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말하는 염려와 우려는 얼마든지 저는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는 지난 과거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일들 중의 하나가 정치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

쌀 문제는 그 쌀이 갖고 있는 그 가치, 공익적 기능을 최고 통치권자나 정책 입안자, 그것을 이렇게 핸들링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말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기 쉽지 않다.

또 하나, 죄 없는 그런 전기자동차 선박에 왜 안 태워 줍니까? 이거야말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정부 편의적 발상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없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없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장관님 힘드신데 차관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서천호 위원**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정부가 연말까지 매입하기로 한 수매 쌀 재고까지 합치면 172만t가량의 쌀 양곡보관창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충 보면. 비용으로 환산 하니까 한 17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재원 부분 또 실제로 이 172만t의 쌀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한지를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쌀 소비 부분이 지금 현재 화두로 돼 있는데 올 상반기 쌀 가공식품 수출이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한 41.4% 증가했어요. 상당히 K-푸드 등에 힘입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이 쌀 가공식품 원산지의 65%가 사실 수입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쌀도 남아도는 처지인데 이 가공식품의 65%를 수입쌀로 대체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든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막걸리 국산 쌀 사용 비율을 보니까 이 역시 수입쌀의 64%가 막걸리 재료로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나중에 자료를 우리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쌀 재배 면적 감축 또 소비 패턴 변화 차원에서 국산 쌀 고급화하는 문제 역시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일본의 예를 듭니다만 고시히카리 아시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고시히카리.

○**서천호 위원** 도쿄 라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제가 10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약 1조 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10년간 1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친환경 면적은 57%가 감소가 되고 농가 수도 약 66% 감소되고 생산량은 3배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나, 세계적인 친환경 농산물 시장은 2015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를 보니까 역으로 12%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추세는 친환경 농법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약 3분의 1 정도로 지금, 반토막도 더 난 거지요.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적으로 차관님 잘 아실 테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처음 시작할 때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농약에 대한 인증제도를 가지고 친환경 인증 품목으로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농약이 중간에 저희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빠진 게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농약이나 유기농도 그렇게 확산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서천호 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 쌀값 안정화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관성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내가 받을 정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서 예산 투입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불금상한제 문제라든지 단가 현

실화 문제라든지 친환경 인증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농약을 드론으로 살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친환경 농법을 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시고 우리 상임위 또는 우리 사무실로 보고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장님, 우리나라 산림의 방향을 보면 60년대 소위 말하는 식재, 조림부터 시작해서 육림을 거쳐서 지금은 목재산업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우리가 기본계획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 어업, 산림 할 것 없이 우리 1차 산업에 기후변화가 가장 큰 요건인데 그게 사실상 크게 변화가 됐고 이제 변화된 대로 더 진행이 된다고 보면 이 산림 부분도 저는 생태계가 변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와 산림 생태계 변화에 따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혹시나 그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천호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탄소흡수원 증진 계획이라고 저희가 2030년까지 산림 분야에서 국가 감축 목표의 11%를 감축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쌀값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단답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요’로만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평가는 우리 국민과 농민들이 할 거니까요. 짧게 해 주십시오.

정부의 쌀값 목표 가격은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거는 단답형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종덕 위원** ‘있다, 없다’로 말씀……

목표 가격이 없다 이런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아, 내부적으로 있으나 발표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전종덕 위원** 쌀 20만 원 가격 유지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가격을 목표로 대책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수급 관리 대책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종덕 위원 20만 원 가격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지는 않겠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말한 격리 20만t 매입으로도 쌀값 하락이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사례에 비춰 보면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추가 격리 의사는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협 재고 대책까지 하면 30만t을 한 것이라고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종덕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올해 24년산 수확기 대책을 9월 중순에 발표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제 다음 질문이 그건데요.

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을 9월에 선제적으로 규모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제적이고 규모 있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 45만t 플러스알파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확기 대책은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하고는 다릅니다, 위원님.

○전종덕 위원 공공비축미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공공비축미 매입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를 하였습니다. 45만t……

○전종덕 위원 45만t?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전종덕 위원 공공비축미를 45만t 매입을 해도 24년도 쌀값이 떨어질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니 이에 따르는 격리 대책까지 좀 함께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플러스알파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알파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시장 상황을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완충물량을 발표합니다.

○전종덕 위원 짧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제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미리 완충물량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밥쌀시장에서.

○전종덕 위원 사전에 격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종의 사전격리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전종덕 위원 말을 애매하게 하셔서……

사전격리 효과인지 사전격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완충물량이 그런 의미입니다.

○전종덕 위원 완충물량을 사전격리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완충물량만큼을 발라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전종덕 위원 지금 말씀 같이 들으셨지만 이렇게 쌀값 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좀 믿을 만한 대책이 없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 통해서 상속세 완화를 하면 5년 동안 매년 약 18조 4000억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농업 문제에 대해서, 특히 농업인 소득이 1100만 원 수준인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자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마음을 정말 헤아린다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수부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 관련 집행 내역을 보니까 426억 원은 이월 처리하셨고 90억 불용 처리하셨습니다. 불용 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900만t급 세 척이 소송으로 10월부터 건조가 중단됐습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어업지도선은 제때 건조되지 못하면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불법 어업·조업 지도 단속, 안전조업, 사고 예방 임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잔여 공사를 위해서 재입찰을 추진했으나 모두 유찰되었지요. 다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의 피해가 커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은데 잔여 공사를 해서 계속 추진할 건지 폐품 처리하고 신규 건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 다 하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이 사업 계약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이면계약서가 발견되어서 계약이 무효가 됐지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입찰 절차나 제안서 평가 등 계약 과정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제대로 확인하셨는지, 책임 소재를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향후 조치는 취하고 있는지,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3000t급 대형 어업지도선 세 척을 신규 건조하기로, 건조되어서 취항하기로 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세 척 모두 LNG 추진 선박으로 새롭게 인력 배치가 돼야 되는데 승선 인원 몇 명 계획하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승선 인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28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28명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올해 21명 받았습니다.

○**전종덕 위원** 맞습니다.

최소한 28명 정도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답변을 그렇게 주셔서,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25명 이상은 돼야 되고 그리고 24시간 당직근무 해야 된다는 것,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춰 보면 3명은 더 추가돼야 되는데 마침 3명을 더, 28명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나머지 사안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도선은 공사 재개를 위해서 지금 재정당국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하고 있고, 소송이 끝나야 일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셨던 이면계약서 관련된 부분은 감사를 지시를 했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국고 손실 등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엄중하게 처벌할 생각입니다.

○**전종덕 위원** 오늘 답변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의원실로 다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보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강도형 장관님, 평택 신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2033억이에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이병진 위원** 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관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최근에 위탁으로 선발된.....

○**이병진 위원** 제주 출신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제주항 누가 관리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제주항 제주에서 관리합니다. 지방무역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지사지해서 제주항이 다른 인천시설관리센터가 와 가지고 관리한다고 하면 60만 제주도민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 명칭만 사실 이렇지 민간 법인입니다.

○**이병진 위원** 명칭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얼굴이에요. 개념, 내용을 규정하는 데 명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평택시가 2001년부터 근 23년을 국가에서 쳐다보지도 않는 구 터미널을 만들어서, 지어서 관리했어요. 그 구 국제터미널 관리 노하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평택시에서 위탁해서 관리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니까 평택시가 노하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경기항만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할 수도 있고 평택항시설관리센터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지금 평택시민이 노도와 같이 해수부로 달려가겠다는 그런 첨보 받지 못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장의 분위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병진 위원** 심각해질 수 있어요.

기초금액으로 171억을 줍니다. 어디한테? 인천항시설관리센터한테.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평택국가항만공사를 만들어서 출자한다든지 우리 해수부가 항만공사에 임대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 여기 다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평택 사람들이 불쾌하게 되고 해수부를 비난하게 만들고…… 평택 업체들은 무시당했다 이런 얘기 해수부가 들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규정에 따라서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심지어 처음부터 까다롭게 규정을 만들어서 입찰공고에 옹찰할 수도 없게 만들었다 이런 여론도 나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정부계약법에 맞춰서 한 것……

○**이병진 위원** 아니, 여론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참여 못 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면 트레이닝 시켜서 말이지요, 평택이 63만 시민을 자랑하거든요. 관리할 수 있어요.

장관님, 이것 철저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본부 감사라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것 끝까지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CY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 많이 드렸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배후부지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병진 위원** 야적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야적장, 예.

○**이병진 위원** 평택시하고 친환경 54만 평 점점을 잘 찾고 협의가 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받았는데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여객터미널 뒤에 유휴부지가 7.8만m²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57억 정도 들어갔는데 한 16억 정도 스타트 예산이 전혀 안 잡혔어요, 올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재정당국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병진 위원** 어려운 상황이라고 포기하면 어떡해요?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이병진 위원** 저도 힘을 보탤 테니까 그것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거기 지금 영세업체 속된 말로 빼쟁이 났어요. 난리 났어요. 맨날 안중읍 송담1로 128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단 말이지요, 물론 시원해서 앉아 있기도 하지만. 언중유골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이지요……

과학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다 비과학적인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과학의 불확실성보다는 비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병진 위원** 아니, 장관님이 모든 것들을 비과학적이라고 일갈해 버려서 그래요, 제가.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이 준 자료 전부 가지고 그냥 발표하면 모든 게 과학적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병진 위원** 아니, 계속 ‘과학적’ ‘과학적’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미나마타병 알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물고기 잡아먹었더니 갈매기가 다 죽고 고양이는 견지 못하고 사람은 마비 증상……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과학기술로 분석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뛰어난 과학기술로. 그랬더니 어떻게? 질소 공장에서 버린 유기수 때문에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그렇지요?

다핵종 제거설비가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얘기하지만 고장도 많이 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삼중수소만 방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습니까? 그것도 다 믿을 수 없어요. 가정은 가정일 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다 온전한 사실로 받으려고 합니까. 그렇지요?

오작동도 나고 제거되지 않은 탄소-14라는 세슘-137, 스트론튬-90, 아직도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치명적인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 배제할 수 없어요. 누가 알아요? 과학이 만능 아닙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것, 연기 나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암 유발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하면 ‘저 사람 괴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존경하는 김도형 장관님.

○**위원장 어기구** 강도형 장관님입니다.

○**이병진 위원** 강도형…… 죄송합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성도 바꿔 주시고.

○**이병진 위원** 맨날 ‘과학’ ‘과학’ 얘기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불안정한 어떤……

○**이병진 위원** 아니, 과학이 확실하지 않다니까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불안정한 가설 혹은 불안정한 가정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보는 게 더더욱 더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과학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앞으로 어디 가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이런 얘기 다시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위원장 어기구** 이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박범수 차관님, 그동안에 농지법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장관님하고는 많

은 대화가 있었고 또 그분 생각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차관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2021년도 LH 직원들의 투기 관련해 가지고 그 이후에 사실은 농지거래가 거의 다 결정적으로 감소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하락하고 일부 농민들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는 우려까지 있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부동산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기는 하지만 농림부차관 입장에서 박 차관께서 생각하시는 현행 농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개정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켜야 될 식량안보라는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충분히 조화시켜 가면서 농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부 농민단체들이 중심을 이루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농지의 자유거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커요. 그 것도 일부는 지켜지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농지의 50%는 비농업인들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60대 이상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전체 농지의 86%에 도달합니다. 농민들에 대한 의식조사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했을 때는 70% 넘는 농민들이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농지거래가 막히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삶에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

또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 많이 해요. ‘농지거래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일반 부동산 다 줄어들었습니다. 토지거래 다 줄어들었습니다. 가격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다만 수도권은 과열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만희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토지나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에 들어간 경력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토지들에 대한 경매는 거의 한두 차례 지나면 다 낙찰이 됩니다. 농지는 끝까지 낙찰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게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농지거래의 자연스러운 감소 현상이다 하는 얘기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이번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관련해 가지고 이 정책과 또 농지거래를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의 정책들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전에 있었던 농촌보전구역에서의 주말·체험영농의 거래는 사실 미미해요. 한 3%, 4%도 안 되는 정도 수준이고요. 또 농지위원회도 만들어져서 굉장히 저것 하는 것 같지만 거의 85% 이상 다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농지거래 자체에 대해서 하나의 굉장히 큰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 줘야 농지거래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우리 고령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은퇴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이 만들어지고 특히 이것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면 어느 정도 인구감소지역이라든지 농촌소멸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선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농지법 개정안들을 준비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발의가 되게 되면 정부 측에서도 차관님께서 좀 진지하게 농민들의 입장을 많이 감안하셔서 내용을, 대안을 제시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저도 이만희 위원님 농지법 관련한 말씀에 백번 동의합니다. 이만희 의원님 대표발의에 저도 같이 공동발의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열정을 가지고 한번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도형 장관님,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항만 물류체계를 고도화하고 환적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신항만을 건설하겠다, 제주를 특화항만으로 발전시켜 물류 선진국으로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 크루즈 모항의 꿈을 실현하겠다, 누구의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제가 축사로 했던 얘기로 기억합니다.

○**문대림 위원**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면 제가 좀 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영륜입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2022년 7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내에서도 제주 신항만은 여객 전용으로 개발, 동북아 대표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하겠다라고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진 위원님이 질러 놓고 가셨는데 이게 지방관리무역항이지 않습니까? 관리주체에 관한 문제를 도와 협의하면서 내후년쯤 제주 신항만 관련 결산·예산을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도 좀 하고 평가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제주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항만기본계획 재검토 중에 있고 제주에서는 또 예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차인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해서 기대감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협의 중에 머무르시면 안 되지 않는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저도 이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 약속하신 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그리고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연근해 불법어업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장관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안설명서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범장망 어선…… 짜풀이 그물이지요, 범장망 그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관련 철거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인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5억이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이번에 재정당국하고 계속 확대하는 것들을 협의를 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게 확대를 하셔야 된다, 올해 예산 벌써 바닥났지요. 올해 예산 제가 확인했는데 한 4월 달쯤에 바닥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그래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리고 20년, 22년, 24년 올해까지는 실적이 좋은데 21년, 23년의 경우에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 이유를 기억 안 나시면 별도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산 규모는 똑같은데 22년은 43통을 회수했는데 21년이나 23년은 1.5통에 불과합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쨌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범장망 어선 하나를 철거하게 되면 한 3t 정도 어획량이 확보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감척사업을 했을 경우에 연안어선인 경우에 1척당 어획량이 약 9t 정도 되는데 감척예산에 비하면 우리가 여기에 돈을 아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그 차이 나는 이유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문대림 위원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성어기 때문에 민간 어선 활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문대림 위원 21년, 23년이 어려웠던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러면 민간 어선인 경우에 이렇게 실적이 좋고 해수부가 직접 회수한 경우에는 실적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닙니다. 성어기 때문에 민간 어선을 임차를 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하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원거리 해역 대응 시범사업 예산 전액 불용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역시 장관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어업지도선을 지속 확충 중이다라고 얘기했잖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이게 왜 중단이 됐지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게 3000t급 이상 되는 민간어선을 수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문대림 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에서 그런 대형 어업지도선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주셨는데 실상 내용은 그렇지가 않고요.

어쨌든 한일어업협정의 중단 이후에 원거리 조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각종 어선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 근해에서만 897회, 어선 사고 현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 이제 이 건조가 중단됐는지 모르지만 어업지도선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장관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어업지도선 지속 확충을 말씀도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차질 없는 추진, 예산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은 괴담 얘기 나오면 굉장히 억울해하시고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괴담이라 그러면.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는 친북 정권이라 그러면 막 화를 내셨는데. 사실 우리한테 자꾸 친일 정권, 친일 정권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좀 파르르할 얘기입니다. 하여튼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 실장님!

김현태 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 김현태** 예.

○**이양수 위원** 내가 수산 실장님하고 업무 협의가 원래 잘되는데 요즘 좀 뜸한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전 질의에서 장관님께 말씀드린 게 다 수산정책실장님 소관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 김현태** 예.

○**이양수 위원** 잘 챙겨 주세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 김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양수 위원** 예, 앓으십시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체어망사업 하고 있잖아요, 해수부에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침적어망 수거사업입니까?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침체…… 그렇지요, 침적어망 수거사업……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끌어올리는……

○**이양수 위원** 하고 있는데 이제…… 어항공단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양수 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깊은 데 있는 것 그리고 큰 것은 좀 국가가 나서서 어항공단 통해서 그렇게 수거를 하고 가까이에 있는 것 있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것은 어항공단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국가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차라리 지자체한테 줘 가지고 돈을 줘서 지자체에서 우리 어선들 연안어선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건질 수 있으니까, 막 큰 배들이 연안에 와 갖고 조그마한 것 줍느라고 멀리 있는 것 그것을 못 끄집어내서 비효율적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안하고 근해하고 좀 나눠 가지고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일반 우리 연안어선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국가가 나서서 직접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좀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검토해서 이것도 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역할은 지금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이양수 위원** 예산은 우리 장관님이 기재부장관하고 가서 싸움을 하든지 면살 잡든지 어떻게 받아 와야지요,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라고 장관님, 그러라고 장관님 앓힌 것이지, 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양수 위원** 그리고 지금 노무라입깃해파리 때문에 자망어선들이 피해가 엄청 크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물이 다 찢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해수부 사업을 보니까 노무라입깃해파리 구제사업 예산은 있는데 그 피해를 본 어선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어요. 피해를 본 것은 그냥 다 지자체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는 지금 위낙에 이게 규모가 온난화 때문에 크게 됐기 때문에 피해지원사업도 지금 어떻게 급히 융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좀 융통해서라도 내려보내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추가지원사업 관련된 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예, 국비로 피해 지원하는 것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양수 위원** 그것을…… 지금 피해지원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지원사업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것 뭐 사실은 예산을 좀 전용하더라도……

○**이양수 위원** 예, 예산 전용해서라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추가적으로 피해입은 어선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꼭 검토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전기, 어업용 전기 이것 계속 나오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양수 위원 그런데 해수부장관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해 드리고 싶은데, 어업용 전기라고 지금 따로 농업 전기처럼 세제, 전기세 혜택을 못 받잖아요?

산자부 반대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담당 실무 부서장들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지금 계속 더워지기 때문에 자망어선하고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자망뿐만 아니지요, 모든 어선들이 냉각기 사용이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갖다가 좀 산자부, 한전이 워낙에 지금 적자가 커 가지고 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좀 얻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양수 위원 그것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전국에 어촌계가 많이 있잖아요? 어촌계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런데 어촌계장들이 사업이 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있어서 그 어촌계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그런 얘기도 좀 안 하는데 대부분의 어촌계들이 사업이라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어장에서 나는 수입 같은 것은 전부 다 벌어 가지고 배당주기 바쁘고.

그런데 이장님들처럼 기름값이라도 아니면 자녀학자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지, 어촌계장들한테 전혀 지금 주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조금씩 마련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 기름값도 안 되고.

그래서 어촌계장들, 전국에 있는 어촌계장들을 이장님들처럼 지원하듯이 좀 지원하는 방안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해 가지고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해수부장관님한테 질의하는데 농림부차관님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해수부 내용도 많이 아시나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위원장 어기구 이양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송미령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희용 위원 한우값 폭락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희용 위원 그래서 우리 한우협회에서는 한우법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우리 농림부에서는 축산법 안에서 내용을 담겠다 말씀하시는 데,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만큼 절박함이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이 축산법에 빠지지 않도록 다 담길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올해 5월부터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가 시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류 농약 검사 후 증명서 발급까지 한 1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수출을 하려면 2주 간에 나눠서 세 번, 네 번 하니까 열흘마다 안 맞지 않습니까, 타임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희용 위원** 그래서 이것을 증명서를 한 장 받고 15일간 쓸 수 있고 사본도 인정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도 개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정희용 위원** 앞으로는 요청에 의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우리 어려운 농민분들이 우리가 살필 게 없는지 농림부 차원에서라도 사전적으로 좀챙겨 주시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희용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포항 영일만항에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사업이 되고 있는데, 국제여객터미널은 준공됐는데 CIQ에 기관이 지금 안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그런데 다른 대산항이나 다른 항에는 터미널 준공하고 진행이 된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마도 국제여객 수요하고 이것 파악하고 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정희용 위원** 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다음에 포항하고 MOU를 했으니까 아마 실질적인 협력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희용 위원** 예, 다시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제가 몇 분이라도 빨리 끝내 드리는 게 빨리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농림부, 해수부 또 우리 농진청, 산림청, 해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덩치만큼이나 풍성하고 풍부한 우리 정희용 간사님 감사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원택 위원** 아니, 질의하기 전에 같이 1분씩만 하기로 했는데 2분 30초를 더 줘서……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원택 위원** 내수면 양식업이 해수부장관님 소관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두 분이 양옆에 있는데, 농지 전용을 하는데 내수면 양식업 하는 데, 축산업은 면제인데 내수면 양식은 필수예요. 농지보전분담금을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납부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축산업은 없어요. 그리고 사용기간은 최장 1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은 무제한이에요. 그런데 내수면은 12년입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다시 전용을 하려면 원상복구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할 것 같아요.

두 분이 잘 협의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나란히 계시니까 두 분이 좀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수면 양식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입니다.

농산물 비축기지와 관련해서 현대화·광역화를 지금 aT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 14곳이 있는데 그중에 aT가 6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축기지는 사실 14곳도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우리 식량 작물에 대한 비축이 필요한데 비축기지를 광역화하고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전북이 좀 제외되지 않도록, 전북이 쌀 논콩 감자, 다양한 식량 작물이 있기 때문에……

장관님,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개식용 이것 지금 식당, 식품점객업이 지금 식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식약처.

○**이원택 위원** 식약처로 가 있더라고요, 이게 농식품부에서 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식약처.

○**이원택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보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원택 위원** 이것 아마 5000여 개의 자영업자들한테는 상당히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일반 농촌에 있는 이 업체들은 전업이 불가능해요. 갑자기 삼겹살집, 소고깃집으로 전업해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업도 기준의 예산, 소상공인 지원예산에서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관님,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원택 위원** 저도 2분 30초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두 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두 분 간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3차 질의가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해서 이원택 간사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잘 마련을 해 주시기를 저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도록 정부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상정된 166건의 법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

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택, 조경태, 윤준병, 이양수 소위원회장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임미애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님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11인)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윤준병 임미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6)
	김선교 박덕흠 이만희 정희용	국민의 힘(4)
	전종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해양수산법안심사(7인)	문대림 송옥주 이병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4)
	◎조경태 서천호 이양수	국민의 힘(3)
예산결산심사(9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5)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문금주 문대림 송옥주 이병진	
	김선교 서천호 이만희 정희용	국민의 힘(4)
청원심사(5인)	이원택 임호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3)
	◎이양수 조경태	국민의 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9인)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박덕흠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만희
이병진 이양수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조경태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박범수
기획조정실장 강형석
식량정책실장 박수진
대변인 전한영
감사관 박선우
정책기획관 김정주
비상안전기획관 김태주
국제협력관 정혜련
농촌정책국장 김종구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
농식품혁신정책관 이상만
농업정책관 윤원습
식품산업정책관 양주필

방역정책국장 최정록
식량정책관 최명철
축산정책관 김정우
유통소비정책관 박순연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김정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원장 송남근
국립종자원
원장 김기훈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차관 송명달
기획조정실장 전재우
해양정책실장 김성범
수산정책실장 김현태
해운물류국장 이시원
해사안전국장 최성용
항만국장 남재현
대변인 정도현
감사관 노진학
정책기획관 류종영
해양정책관 김용태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
국제협력정책관 김명진
수산정책관 홍래형
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 서정호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단장 노재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양영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 윤현수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최용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류재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장 김재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장 강정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장 양동엽
농촌진흥청
청장 권재한
차장 서효원
기획조정관 이상호
연구정책국장 김병석
농촌지원국장 권철희
기술협력국장 김황용
산림청
청장 임상섭
차장 이미라
기획조정관 이종수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림복지국장직무대리 안병기
산림보호국장 김용관
해양경찰청
차장 오상권
기획조정관 안성식
종합상황실장 김석진
경비국장 여성수
구조안전국장 박재화
수사국장 김인창
정보외사국장 고민관
해양오염방제국장 송영구
장비기술국장 백학선

【보고사항】

○의안 회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

이상 4건 7월 16일 회부됨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7. 1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9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4)

이상 3건 7월 17일 회부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17.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9)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7.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2)

이상 10건 7월 18일 회부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2024. 7. 18.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1)

이상 6건 7월 19일 회부됨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7. 19.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

이상 9건 7월 22일 회부됨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1)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7. 22.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2.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

이상 12건 7월 23일 회부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3.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8)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7)

이상 10건 7월 24일 회부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3)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0)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10)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7.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20)

이상 6건 7월 25일 회부됨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5.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8)

7월 26일 회부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99)

이상 5건 7월 29일 회부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3)

한우산업지원법안

(2024. 7. 29.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9.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59)

이상 7건 7월 30일 회부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3)

8월 1일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9)

이상 2건 8월 2일 회부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8)

이상 2건 8월 5일 회부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5.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2024. 8. 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5)

이상 2건 8월 6일 회부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5)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8.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8.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0)

이상 6건 8월 9일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0)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8. 1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이상 4건 8월 14일 회부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4.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4.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2)

이상 2건 8월 16일 회부됨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6.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6.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8)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4. 8. 16.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8)

이상 3건 8월 19일 회부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3)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8. 19.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9.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

이상 4건 8월 2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4. 7. 15.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7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2024. 7. 17.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9)

7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특별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18.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6)

7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9)

이상 2건 7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23.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7)

7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73)

7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1.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이상 2건 8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4. 8. 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4)

8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청원 회부

해경72정 선체인양 후 유해수습과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순직자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4. 7. 23. 강태윤으로부터 박지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1)

7월 23일 회부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청원

(2024. 7. 31. 황광호 외 8인으로부터 임미애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6)

7월 31일 회부됨

○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훈령	예규	계
농림축산식품부	7	-	7	15	3	1	33
해양수산부	6	-	9	39	22	8	84
농촌진흥청	-	-	-	4	4	-	8
산림청	6	-	5	5	11	1	28
해양경찰청	-	-	-	1	8	4	13